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 충남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23. 7. 28.(금) 14: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03호)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정토론회 개요 및 흐름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7. 28.(금) 14:00
- 장 소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03호)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충남학생인권 조례 현안 진단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학생권리 방안 모색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사회 :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14:05~14:20	15' 내빈소개 및 인사말씀	박정식 의원
〈 토 론 회 〉 ※ 좌장 : 박정식 의원		
14:20~14:30	10' 현 행 조 례 설 명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
14:30~15:30	60' 주 제 발 표	발표자 4명(각 15분) 신영철→허창영→김지연→박신자
15:30~16:20	50' 자 유 토 론	제한토론(30분), 확대토론(20분)
16:20~16:30	30' 정 리 및 폐 회	좌 장(박정식 의원)

목 차

■ 조례설명

- ☞ 충남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센터 소개 1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 주제발표

- ☞ 충남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의 비교 11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 31
허창영 인권보호팀장(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 ☞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에 대한 제언 53
김지연 대표((사)한국가족보건협회)
- ☞ 학생인권 조례를 통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101
박신자 교장(홍동중학교)

충남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
의 정 토 론 회

조례설명

충남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센터 소개

김 지 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모두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센터 소개

김 지 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I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제정 배경과 법적근거

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배경

- 가.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과거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갖은 차별과 욕설, 규제, 인격적 무시를 겪었던 것이 사실임
- 나.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학생인권을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어옴
- 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는 2019년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에서 5차 세미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고, 의견 수렴을 위한 도의회 주관 1회 공청회를 거쳐 2020년 7월에 제정되었음
- 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년)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2017년)등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 및 확대를 권고함.
- 마. 2010년 경기도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한 이후 광주, 서울, 전북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충남은 2020년 7월 10일 전국에서 5번째로 제정되었음

2.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대한민국은 1991년 비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193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협약은 만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간 주체로 규정 함
 -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 생명·존중과 발달의 원칙, 의견 표명의 권리와 참여의 원칙 등 아동 인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소》

-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 확인 소송’ 기각(2019. 11. 28)
 -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위헌 소송 각하 함.
 -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고유하게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다. (판결문 내용 중)

1. 충남학생인권조례 주요 경과

- 2019년 3월~11월, 도의회 학교인권문화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22명, 5차 세미나 및 토론회)
- 2020년 5월, 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
- 2020년 6월, 충남학생인권조례마련을 위한 공청회
- 2020년 7월,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 2020년 9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제작 보급
- 2020년 9월, 제1기 충남학생인권의회 구성
- 2020년 10월, 제1기 충남학생인권위원회 1차 정기회
- 2020년 12월, 초·중·고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보급
- 2021년 1월, 학생인권옹호관 및 상담조사관 선발
- 2021년 2월, 학생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연수
- 2021년 3월, 충남학생인권센터 개소
- 2021년 3월, 노동인권 기초상담사 2명, 권역별 고문노무사 5명 위촉
- 2021년 4월, 손바닥 학생인권 조례집 학교 보급
- 2021년 7월, 제1회 충남 학생인권의날 기념식
- 2021년 7월, 충남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21년 10월, 학생인권조례 그림으로 표현하기 공모전
- 2021년 11월, 제2기 학생인권의회 1차 정기회
- 2022년 1월, 학생인권교육 지도교사 연수
- 2022년 2월, 2021년 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회
- 2022년 3월,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 연수
- 2022년 4월, 지역교육지원청 학생인권 장학사 연수
- 2022년 7월, 제2회 충남 학생인권의날 기념식 및 학생인권작품 공모전 전시회
- 2022년 9월, 제3기 학생인권의회 위촉장 수여식 및 연수
- 2022년 10월, 제2기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 2022년 11월, 중·고등학교 교장단 인권 연수
- 2023년 1월, 2022년 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회
- 2023년 2월, 충남학생인권의회 배움자리
- 2023년 2월, 국가인권위원장 충남교육청 방문 간담회
- 2023년 3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태지역 한국담당관 간담회
- 2023년 4월, 충남학생인권 및 교육보호활동 교감 배움자리
- 2023년 7월, 제3회 학생인권의날 기념식 및 원탁토론회

2. 충남학생인권센터 목표 및 과제

추진 목표

모두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추진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상담·구제 활동 강화 ○ 교원 역량 강화를 통한 학생인권·노동인권교육 내실화 ○ 학교생활 속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원기구 활성화 ○ 협력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	--

중점과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학생인권 보장 지원 체제 구축</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센터운영 - 학생인권기본계획 추진 -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활동 - 노동인권 상담·권리찾기 지원 활동 -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 수업자료 개발 보급 - 애니메이션·웹드라마 제작 보급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생인권 보장기구 활성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운영 - 학생인권의회 운영 -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지원 - 학생인권주간 운영 지원 - 충청남도학생인권의 날 운영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외협력 홍보활동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운영 - 언론 홍보 활동 추진 - 타 지역 학생인권센터 및 인권기구 협력 </td> </tr> </table>	학생인권 보장 지원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센터운영 - 학생인권기본계획 추진 -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활동 - 노동인권 상담·권리찾기 지원 활동 -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학생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 수업자료 개발 보급 - 애니메이션·웹드라마 제작 보급 	학생인권 보장기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운영 - 학생인권의회 운영 -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지원 - 학생인권주간 운영 지원 - 충청남도학생인권의 날 운영 	대외협력 홍보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운영 - 언론 홍보 활동 추진 - 타 지역 학생인권센터 및 인권기구 협력
학생인권 보장 지원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센터운영 - 학생인권기본계획 추진 - 학생인권 상담·권리구제 활동 - 노동인권 상담·권리찾기 지원 활동 - 학생인권 실태조사 실시 								
학생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 교원 전문성 강화 연수 - 수업자료 개발 보급 - 애니메이션·웹드라마 제작 보급 								
학생인권 보장기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학생인권위원회 운영 - 학생인권의회 운영 -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지원 - 학생인권주간 운영 지원 - 충청남도학생인권의 날 운영 								
대외협력 홍보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담회 운영 - 언론 홍보 활동 추진 - 타 지역 학생인권센터 및 인권기구 협력 								

3. 충남학생인권 사업 주요 성과

가. 학생인권 증진 기틀 마련에 앞장

1) 학생인권의회 구성 (50명)

- 주요 활동: 정기회, 분과별 활동(홍보, 운영, 교육정책, 생활규정), 학생인권의 날 운영
- 제1기 충남학생인권의회 (2020. 9. 1. ~ 2021. 8. 31.)
- 제2기 충남학생인권의회 (2021. 9. 1. ~ 2022. 8. 31.)
- 제3기 충남학생인권의회 (2022. 9. 1. ~ 2023. 8. 31.)

2)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15명)

- 주요 활동: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자문과 시행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정기회 4회, (임시회) 필요에 의해 소집
- 1기 위원회(2020. 10. 1. ~ 2022. 9. 30.)
- 2기 위원회(2022. 10. 1. ~ 2024. 9. 30.)
- 구성: 15명(학생, 시민단체, 도의원, 교사, 학부모, 장학사, 공모)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설치(2021. 3. 1.)

- 옹호관 1명, 장학사 2명, 상담조사관 1명, 주무관 1명

나.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 강화

1) 상담과 권리구제 원칙

- 친절·공정·신속·정확, 조사 목적의 범위와 절차 준수
- 비밀유지·인권 존중, 처리기한 준수(구제신청 90일 내 처리)

2) 학생인권 상담

- 전화, 전자우편, 누리집, 국민신문고, 교육감에바란다, 모사전송(fax) 등 활용

3) 학생인권 침해사건 조사

- 조사팀 운영(상담조사관+장학사)
 - * 상황에 따라 지원청 학교 담당 장학사 활용
- 조사 방법
 - 기초조사: 전화·내부메일 활용
 - 현장조사: 학교 방문, 피해자 방문 조사, 전수조사

4) 학생인권 상담 현황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

구분	2021 현황	2022 현황	2023. 6. 현황
학생인권 상담	105건	116건	96건
권리구제 접수	11건	23건	8건
권리구제 조치결과(권고)	5건	7건	0건

• 학생인권침해 유형별 상담 현황

상담 유형	2021년	2022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조 체벌	7	9	1			3			1				4	
6조 언어폭력·폭언 등	18	29			2	5	4	1	2	1	4	3	3	4
6조 기타														
7조 양심·종교		3					1		1		1			
8조 의사표현														
9조 개성 실현	2	10			2		4			2	1		1	
10조 사생활·개인정보	7	11			1	3	1	2	2		1			1
11조 정보접근	6													
12조 정보열람·공개청구	1													
13조 보호	1	7	1			1		1			3			1
14조 부당징계	12	10	1		1	2	2		1		1	2		
15조 차별	6	11	1	1		1	3		4					1
16조 성인지	1													
17조 이의제기														
18조 의견제출		2									2			
19조 자치활동														
20조 학칙제·개정														
21조 정책결정		1							1					
22조 학교운영위원회														
23조 학습권	2	8	1		1	1				1			2	2
24조 교육환경·건강	3	5			1	1	1					1	1	
25조 급식		1						1						
26조 안전보장	3	1									1			
27조 휴식·문화권		2			1			1						
28조 소수자권리														
학교생활규정	13	2					1							1
학교생활지도	9	1					1							
조례불만	5	1						1						
기타	9	2						1	1					
총 합계	105	116	5	1	9	17	18	8	13	4	14	6	11	10

5)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찾기 지원

- 노동법률 상담활동 상시 운영: 전문 상담사 2명 위촉
-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권리구제 지원: 권역별 고문 노무사 5명 위촉

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1) 충남 학생인권의 날 및 학생인권 주간 운영

- 제1회 학생인권의 날(2021. 7. 10.)
- 제2회 학생인권의 날(2022. 7. 9.)
- 제3회 학생인권의 날(2022. 7. 10.)

2) 학생인권 조례 홍보

- 손바닥 학생인권 조례집 보급
- 조례를 읽어주는 남자 동영상 보급
- 학생인권센터 홍보 포스터 배부

3) 학생인권 공모전

- 매년 학생인권 작품 공모전 진행 및 전시(7월)
- 영상, 포스터, 이모티콘

라. 학생인권교육 내실화

1) 찾아가는 학생인권·노동인권교육 강사단

-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내부강사 111명, 외부강사 11명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내부강사 80명, 외부강사 26명

2) 학생인권·노동인권교육 운영

-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3) 학생인권·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구분	수업 자료명
2021년	-초.중.고 교육과정연계 수업자료 ‘삶으로 배우는 인권교육’개발 -노동인권 수업자료 ‘고등학생, 노동인권을 만나다’개발 -노동인권 웹드라마 ‘알기쉬운 알바이야기’ 2편 제작 -유.초대상 인권교육 애니메이션 ‘인권지킴이, 지키’학생인권조례편 제작

구분	수업 자료명
2022년	-초.중.고 교육과정연계 수업자료 ‘너와나, 우리의 인권교육’개발 -노동인권 수업자료 ‘중학생, 노동인권을 만나다’ 개발 -유.초대상 인권교육 애니메이션 ‘인권지킴이, 지키’혐오와 차별편 제작 -중.고 대상 학생인권교육 웹드라마 ‘알기쉬운 인권 이야기’ 제작
2023년	-학생용 학생인권·노동인권 수업자료 개발 보급(3종) -보호자용 학생인권 교육자료 개발 보급 -웹드라마, 애니메이션 교육자료 개발 보급

4)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학생인권·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심화연수
- 학생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감 배움자리

4.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학교의 모습

- 가.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통로 개설
- 나. 학생인권센터가 단순 민원 처리 기관이 아닌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제 조치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교사와 보호자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중재와 상호 존중 의식을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함
- 다. 교사의 체벌과 폭언, 선도부를 활용한 교문 단속, 과도한 복장, 두발 단속에 대한 기준 제시로 학교 문화 변화
- 라.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관습적으로 있어왔던 통제 중심의 규정을 학교 구성원들간 관계를 회복하는 인권친화적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정
- 마.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 확대와 교재 개발을 통한 인권(노동인권) 교육이 내실화 됨

주제발표

충남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권리 정책의 비교

신 영 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문위원)

충남 학생인권 조례와 해외의 학생 권리 정책의 비교

신 영 철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연구자문위원)

I. 서 론

학생인권조례를 일찍 제정한 서울시의 학교들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담임선생님을 폭행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하는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알려지고 있다. 하인 리히의 법칙은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서울시 학교의 사고에 접목하면 이미 수백 개의 서울의 학교에서 동일한 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에는 빠지지 않고 학생인권조례가 거론 된다.

학교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상의 원인은 시도 의원들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비교육적이라는 것, 단위학교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학교 생활 규정을 학생인권조례가 대체한다는 것, 학생들이 교사들을 신고하도록 하여 교사들을 약자로 전락시킨 학생인권조례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68운동으로 학생권리운동의 막을 올렸던 프랑스는 2008년에 대통령이 68운동으로 인한 피해를 비판하며 교사들에게 권위 회복과 지식 교육을 강조하는 편지를 보냈다. 프랑스는 2018년에는 학생 보호를 위해서 15세 이하의 학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의회는 법으로 제정하는 나라로 변화였다.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은 60-70년대 서구의 학생권리운동의 모방이며, 서구는 당시에 학교내 범죄 증가와 학력 저하를 경험하고 중단됐던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을 진보라고 주장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부합되는 게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이다. 진보가 아니라 퇴보, 수구이다. 동일한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은 예정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첫째는 교육적 측면이다. 유니세프는 모든 아동은 학교에 가서 교육적으로 성공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에 여러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뉴욕시 학생 권리 장전에서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로 제시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철저히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몇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안 운동이 전개되었었고,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¹⁾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은 심각할 정도로 증가했다. 한국의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비교육적인 조례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라는 뉴욕시의 학생 권리와 의무 장전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례 제정의 적법성 측면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학교의 생활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학교생활규정(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제정과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도의원들이 학교생활규정과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2015년 대법원은 몇가지 가정을 제시하며 본질을 벗어나며 합법화하는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지금 그 가정들은 사실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헌법 재판소가 2019년에 학생인권조례를 합헌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미국 같았으면 위헌감이라는 것도 살펴 볼 것이다.

서울의 학교들에서 학력 저하에 이어서 교사들의 구타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 조례,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하는 것은 충남의 학교에서 서울과 같은 불미스런 사고와 학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1) 교육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2019.3.28.) <http://bit.ly/414GVAD>

II. 미국의 학생 권리와 제한2)

II장의 내용은 이석배·송요원·이준순(2012)의 『선진국(미·영·독·일)의 학생 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비교 연구』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편의상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표기는 생략합니다. 내용 순서의 재배치는 약간 있습니다. II장의 내용을 인용시에는 이석배·송요원·이준순(2012)의 보고서를 출처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기본적 권리와 제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1) 학생의 권리와 징계에서의 적법절차 강조로 인한 문제점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도 ‘부모 대신’의 원리에 따라 학교 당국의 제한조치는 널리 인정되었다... 그러나, 1967년 Gault 판결에 의해, 학생 징계절차가 적법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학칙에 명문화되었고, 학생은 자신의 권리와 학교 당국의 권한 범위를 알 법적지위를 가진다고 하여 교내 관계의 법규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9년 연방대법원의 Tinker 판결은 학생의 권리라는 개념을 들어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평등관계로 바꾸었고, 학생의 자유를 학교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고 보게 만들었다(pp.22-23).

그러나 학생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육을 위한 조치에도 적법 절차를 요구한 결과, 교실에서의 지나친 성적 표현, 미혼모, 폭력, 총기 사건, 마약매매의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형식적인 학생의 권리 강화는 학교생활을 심각하게 비인격화하였고,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간의 인간적인 소통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태를 악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의 중요한 한 요인은 학교 내의 규율과 징계의 이완에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이다(p.24.).

(2) 학생의 인권의 향유는 성인과 같지 않다.

1980년대부터 연방대법원은 보호주의로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Schall 사건에서 ... 보호주의이념을 다시 부활시켰다. 1988년 Kuhimeie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학생이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성인의 기본적 인권과 동일한 범위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p.24.).

2) 이석배·송요원·이준순, 『선진국(미·영·독·일)의 학생 인권 보장과 제한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3)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권리)의 제한에 대한 법적 논리

첫째, 학생의 신분을 특혜로 보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은 1972년 연방대법원이 Perry사건에서 배척됐다.

둘째,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를 계약으로 보는 이론은 사립학교에서만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사립학교는 헌법의 기본적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는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를 철저히 계약관계로 보아,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립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셋째, ‘부모 대신에’의 원리로 보는 입장이다. 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낸 이상,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도할 권한을 학교나 교사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학부모가 행사하는 것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1985년 연방대법원은 T. L. O. 판례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공립학교 관리자들은 ... 공적으로 위임된 교육·훈육상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했고, 1986년 Fraser 사건에서는 “법원들은 어린이들을 음란한 성적 표현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부모의 대리자로서 행동하는 학교 당국의 배려를 승인해왔다”라고 하여 부모대신에의 이론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넷째, 학교를 특수한 환경으로 보는 이론으로서 학교의 교육 사명(교육적 관심, 교육적 배려, 교육적 목적)과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비교 형량해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69년 Tinker 판결은 “수업에 대한 실질적 방해와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1987년 Hazelwood 사건에서는 “공립학교 학생의 연방헌법 제1조 상의 권리는 다른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의 권리와 동일한 범위로 향유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학교 환경의 특수성의 견지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2007년 Fredrick 사건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으며, 학교가 특수한 환경이라는 이론이 연방대법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pp.24-27).

(4) 결론

1960~1970년대에는 학생이 ‘수업에 대한 실질적 방해와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만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학교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이 ‘수업에 대한 실질적 방해와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당한 교육적 배려(목적)를 위해 합리적 범위에서 학칙으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가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는 한, 학생들의 헌법상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p.27).

2. 학생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입법례

(1) 법률

미국의 연방헌법은 헌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것들의 모든 권한은 주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에는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교육에 대한 권한은 주(주 의회)가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교육목적을 위해 제약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p.40).

뉴욕과 텍사스 주의 교육법에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징계 규정만 있다. 다만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법에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4개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징계 규정 등도 있는데, 이 규정들은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것은 ①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② 체벌금지, ③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법의 특징은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이다.

(2) 조례

미국에서는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에 있는데, 주 의회는 학교를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한 정책결정권을 지역교육위원회에 부여하였다. 텍사스 주의 학생행위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의회를 대신하여 주 교육위원회가 지역교육위원회와 교육구에 지침을 보낸다. 교육구는 지역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생행위규칙을 제정한다(p.43).

뉴욕시의 경우, 교육감은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징계 및 중재 규정’을 제정한다. 뉴욕 시의 모든 학생들이 준수해야 하는 ‘징계 및 중재 규정’에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립학교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적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학생의 의무’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학생의 권리·의무’ 선언의 다음 장에는 ‘학생 징계규정’이 있다. 뉴욕 시는 권리 중심의 학생인권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pp.43-46).

캘리포니아 주 Unified School District의 학생행위규칙에는 교육위원회 정책제5134호에 따라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이 담겨져 있다. 미국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학생인권조례는 없다(pp.46-47).

영국, 독일, 일본도 학생인권조례는 없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p.47).

(3) 학칙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학칙(행위규칙)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지켜야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주 의회는 교육에 대한 권한을 주(州)교육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주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대강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지역교육위원회에 위임한다. 지역 교육위원회는 연방대법원 판례, 주 법률 그리고 주 교육위원회의 정책을 참고하여 교육구(school district)에 대강적인 지침을 보낸다. 교육구는 지역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칙(학생행위규칙)을 제정한다. 뉴욕 시는 자체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학생 징계 및 중재 기준’을 제정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생행위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청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다(p.47).

교육구가 학생행위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본적 인권침해를 이유로 학교에 문제(집회, 시위, 청원 등)를 제기하지 않는다(p.48).

모든 학교는 학기 초에 핸드북을 제작하여 모든 학생들과 부모에게 나누어주고 읽어보았다는 확인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는 학생이 학생행위규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경우, 그런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학교는 증거물로 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한다(p.48).

행위규칙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구성원은 주 또는 도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학부모, 교장 그리고 교육구의 생활지도담당 교사대표들이 모여 학생행위규칙을 만든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교육감은 교육구 내 변호사를 중재자로 하여 중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거친 후 지역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뉴욕 시에서는 교장, 학부모, 후원자 그룹의 사람들, 교원노조원들, 학생 1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위원들이 학생행위규칙 안을 제정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학생행위 규칙을 공포한다. 휴스턴시의 경우 지역교육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교육구의 변호사들이 행위규칙 안을 만들면 교육감이 지역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p.48).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학생은 학칙(학생행위규칙)을 제정하는데 직접적 결정권이 없다. 다만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이다(p.48).

(4) 영국

영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학생들이 지켜야할 의무도 강조한다. 학칙(학생행위규칙)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국에서 학칙과 관련된 법은 ‘교육과 검사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이다(p.48).

제88조 규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의무

(1) 관련된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선행과 규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구해야 한다.

영국은 학교에 상당한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장은 학칙(학생행위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제정된 규칙을 모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고 한다. 기존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서명을 받았고 신입생들에게는 입학하면서 서명을 받는다. 서명은 학생이 행위 규칙을 다 읽고 숙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학생행위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규칙을 적용했을 때 반발하지 않는다고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학교는 불만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규칙이 싫으면 다른 학교로 가라’고 말할 정도로 규칙에 관한 냉정히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학교 규칙은 교원들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중심되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한다고 한다(p.51.).

(5) 독일

독일에서도 학칙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칙의 제정과정은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 독일의 학칙은 학교위원회에서 제정, 개정한다. 학교위원회는 교사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사대표, 학부모위원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학급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회에서 선출된 학생대표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들이 상호합의를 통해서 학칙이 제정된다. 학칙은 위반한 경우에 징계조치로서 교육조치와 질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효력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학생과 학부모(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p.52-53).

(6) 요약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법률에 특별히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성인과 학생을 구분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체벌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두고 있는 국가는 있다. 사람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교육목적을 위해 학교 내에서 제한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조례로 하지 않고, 주로 학칙으로 한다(p.55.).

다른 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하는 조례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실정법 체제의 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다**(p.56.).

학교는 사회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회이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수·학습을 하는데, 학교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나 학교의 질서유지 또는 교육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들에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많은 재량권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교육 행정기관(교육부, 교육청, 교육위원회)은 학교에 행정명령 및 지침을 발하거나,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방법을 통해 한다. 교육행정기관은 학교 현장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을 법률이나 명령 또는 조례로 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는데, 학칙 안에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p.56.).

Ⅲ. 한국의 법 체계와 학생인권조례와의 관계

1.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생인권조례를 지자체가 만들어 규율하려는 것은 미국식을 모방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은 교육감이나 시·도 의회가 아니라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교육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다.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헌법 규정이 침해되고, 교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하여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공포한 것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도 학생인권조례가 생활규정(학교 규칙)과 같다고 본 것이다. 2015년 대법원은 교육부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1)법령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또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조례안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지도와 교육과정에서의 교사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선택은 교육감 등의 권력적인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라 조언·권고 등 비권력적인 장학지도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새겨지고, (3)이 사건 조례안도 인권옹호관의 시정권고 외에 그 내용을 강제하는 어떤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었다.³⁾

2015년 대법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이 권력을 행사하여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도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제정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본질을 회피했었다.

그러나, 2017년 전북 부안의 교사가 경찰에서도 무혐의한 성추행 무고를 당하던 교사를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하고, 징계 권고에 따라 징계 조치를 당하고, 교육감, 국가인

3) [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조례안의결무효확인[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사건] <http://bit.ly/3Ubq8j9>

권위원회등의 구제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여러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인권 규정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학교 규칙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2015년 대법원의 ‘그렇지 않을 것이란 가정’이 깨진 것이다. 어쨌든 합리화해주려 했던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여 절대 진리가 아니란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2) 2021년 법제처의 회신

2021년 법제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내용의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에 의무를 부과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치권을 훼손하였다.

학교 규칙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로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 강제되는 규범체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의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합니다.

더욱이 학생의 학습권이나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학생인권조례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각주: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학교 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것은 해당 학교 규칙이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강제되는 ‘법령’에 학생인권조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본 것인데,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는 학교 화장실/탈의실/샤워실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학생도 쓰게 하라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등의 내용이나, 학부모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학생의 성관계의 자유화/권리화(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의 2항) 등을 담고 있으므로,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학교 규정의 제정 권한이 시도의원들이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4) <https://bit.ly/40G6zuR>

라는 원칙을 망각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또, 학생의 권리는 교육 목적상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담지 않고 모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이 역시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겁박한 회신이라 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에 대해 합헌 결정

2017년 기독교 사립학교(디지텍고)의 이사장등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5조의 3항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등의 예시한 사유로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봤다.⁵⁾

1) 캘리포니아주 교육법과의 비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한 사람은 기독교 사립학교 이사장이다. ‘종교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제20조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이며, 교육 활동도 종교활동에 속한다. 즉, 조례의 내용이 종교와 충돌할 때에 헌법 제20조의 기본적인 인권을 헌법 재판소가 보장하고자 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20조. 차별의 금지

주의 재정을 지원 받거나 주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등록한 교육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이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도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국적, 인종 또는 민족성, 종교, 성적 지향, 이민 상태를 포함하여 형법 제422.55조에 규정된 증오 범죄의 정의에 포함된 다른 특성’에 의해서 차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 제221조. 종교적 면제

이 조항은 종교 단체의 종교적 교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종교 단체에 의해 통제되는 교육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RTICLE 3.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220 - 221.1]

5)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16>

No person shall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gender,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nationality, race or ethnic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characteristic that is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hate crimes set forth in Section 422.55 of the Penal Code, including immigration status, in any program or activity conducted by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receives, or benefits from, state financial assistance, or enrolls pupils who receive state student financial aid.

Section 221 - Religious exemption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s controll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if the application would not be consistent with the religious tenets of that organization.

캘리포니아주는 동성애와 성전환 이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주중의 하나이다. 교육법에도 차별금지 조항(220조)이 있다. 그러나, '표현에 대한 금지'는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 종교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차별금지 조항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동성애와 성전환 이슈에 적극적인 바이든 정부에서도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별금지 조항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 지원금을 받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 명령에서 신앙 기반 학교는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12일 미 농무부는 성명에서 성 차별의 정의를 확장시킨 행정 지침을 신앙 기반 학교에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⁶⁾

즉, 미국이었으면 서울과 같이 소송 자체가 필요가 없도록 입법이나 정책 시행단계에서 종교계 사립학교는 적용제외가 보장되었을 인권의 침해였던 것이다. 조례의 제정과 기독교 사립학교에의 적용을 강요하는 문제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헌법적 권리이며, 기본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 보장을 외면한 결정을 한 것이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에 헌법 재판소는 한쪽 편을 든 것이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에 번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2022.8.23.) 미 농무부 “신앙 기반 학교,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명령서 제외”
[출처] 기독교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959#share>

IV. 결 론

본 발제문은 해외의 학생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제한되는가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미국은 교육감의 권리와 의무 선언의 형식이며, 엄격한 학생의 품행 준수를 제시하며, 그것을 위반할 시에 수십 가지의 징계와 중재 조치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한국처럼 비교육적인 것까지 권리화 하지 않는다. 또, 미국, 영국, 독일, 일본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것이 없음도 밝혔다.

한국에서 조례로 추진된 것은 2006년 민노당의 ‘학생권리법안’이 성공하지 못하자 조례로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학생의 품행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도록 되어 있기에 불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서 강행해왔고, 그것을 법원이 비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상위법이 없고, 만들수록 교육적 문제가 늘어나는 악한 조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해외의 학생 권리 내용과 학생인권조례의 권리 내용의 비교하여 설명하면 명확하나 시간관계상 제한이 있으므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미루도록 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로 뒤에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을 첨부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가장 좌파·진보라는 뉴욕시에서도 교육은 한국의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것처럼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0여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학교 교육을 부러워했지만, 이제 한국의 학부모들이 미국의 학교 교육을 부러워하게 된 것이다.

법대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규칙을 엄격히 잘 만들어 운영하면, 교육붕괴, 교권침해는 자동으로 예방될 수 있음을 뉴욕시 교육청의 생활 규정과 징계규정을 보면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을 방해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감, 시도의원들의 인식과 목적이 문제인 것이다.

[참고]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2019)

서 문

뉴욕시 공립학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여러 활동과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상호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학생 개개인을 위한 풍부한 학습 경험과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양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I. 무료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무료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학생의 권리”입니다. 학생의 권리:

1. 법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때까지 또는 고등학교 졸업 전에 21세가 되면 그 때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다언어 학습학생으로 판명된 학생의 경우 이중언어 교육 또는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받을 권리,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장애 학생의 경우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
2.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와 이런 문제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고 느꼈다면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는 권리(교육감 규정 A-830, A-831, A-832, A-420, 및 A-421)
3. 실질적인 혹은 인지된 나이, 인종, 신념, 피부색, 성, 성 정체성(학생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권리와 그들의 성 정체성에 맞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릴 권리 포함),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성적 성향, 육체적 혹은 정서적 상태, 장애, 기혼유무, 그리고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의있는 태도와 존중을 받을 권리;
4. 학년 초 혹은 학년도 중 학교에 입학하는 즉시,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 (징계 규정 포함)와 K-12 뉴욕시 교육청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등 학교 방침 및 절차 규정이 적힌 인쇄물을 받을 권리;
5. 교과목 및 시험을 포함하여 졸업장 취득을 위한 필수 조건과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6. 필수적인 보건, 인지 및 언어 선별 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과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받고 선택 과목을 고르는 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권리

8.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9.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과목의 채점 기준을 알 권리,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한 과제물의 점수를 받을 권리
10. 비공식적 평가나 공식적 중간성적표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습 진척 상황을 통보 받을 권리
11.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히 통보 받을 권리
12. 유급 또는 과목 낙제를 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 받을 권리
13.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적 기록 취급에 있어 비밀 유지 보장을 받을 권리
14. 고등교육 기관 및/또는 모병기관에 본인의 연락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학생 정보를 군대, 군사적성검사(ASVAB)를 시행하는 학교들에 공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및 학생 모두의 서면 동의가 제공되지 않는 한 모병관들에게 학생 성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5.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과 진로 및 직업 개발에 있어 안내, 상담 및 조언을 받을 권리

II. 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든 학생은 뉴욕시 교육청이 수립한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며,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여 모임을 갖고 평화적이고 책임 있게 시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학생의 권리:

1.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2. 평등법(Equal Access Act)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학생 단체, 사교 및 교육 클럽/팀, 정치, 종교, 철학 모임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3.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필요시 투표권 행사)
4. 책임 있는 발행 방식과 정당한 교육적 관심사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정 내에서 학교 생활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 견해를 표현하는 학교 신문과 학교 뉴스레터를 발행할 권리
5.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신문, 글 또는 정치적 전단(전자통신 포함) 학교 내에서 배포할 수 있는 권리. 단, 배포 시간, 장소,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6.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다양한 버튼, 배지, 및 완장을 착용할 권리. 단,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혼란케 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7. 학교에서 정한 합리적인 지침에 따르는 범위 내에서, 학교 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권리. 단,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가하거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8. 교복 관련 교육청 방침 및 종교적인 표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 복장이 위험하거나 또는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예외;

9. 자신의 신변, 신분증, 소지품 등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 내에서 사용이 허락된 개인 소지품을 학교 건물 안에서 소지할 권리
10. 몸 수색 등과 같은 부당하거나 무차별적인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11. 체벌 및 언어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교육감 규정서 A-420 및 A-421에 의거);
12. 충성의 맹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국기에 대한 맹세 시 기립을 거부할 권리

III.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

모든 학생은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에 따라 공평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

1. 규율 규정 및 학교 규칙과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
2. 무엇이 적절한 행동이며, 어떤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3. 학생의 학교 내 교육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에게 상담 받을 권리;
4.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질 수 있는 처분과 결과를 알 권리;
5. 교칙 위반 혐의로 징계조치를 받아 교사에 의해 퇴실조치를 당하거나 정학 당할 경우 공정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 장애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의 경우, 장애인 교육법(IDEA)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권리;
6. 교칙 위반 혐의로 징계조치를 받아 교사에 의해 퇴실조치를 당하거나 정학 처분을 받을 경우 공정한 법적절차를 밟을 권리. 장애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의 경우, IDEA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권리;
7. 본 규정에 서술된 권리 및 책임과 관련 담당 교직원이 내린 조치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 권리;
8. 면담이나 공청회에 학부모나 부모 관계에 있는 성인 및 대리인과 동반 참석할 수 있는 권리;
9.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 직원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IV. 18세 이상 학생의 추가적 권리

연방 가족교육권 및 신상보호법("FERPA")에서는 18세가 된 학생들에게 교육기록과 관련된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교육감 규정 A-820에 의거하여 뉴욕시 교육청이 학생의 요청서를 접수한지 45일 이내에 자신의 교육 기록을 요청, 조사,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기타 FERPA의 신상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 교육감 규정 A-820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자신의 교육 기록 중 개인 신상을 노출시킬만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FERPA에서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특별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생략)

18세 이상의 학생들은 뉴욕시 교육청에서 FERPA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경우, 미 교육부에 불만을 접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FERPA 시행 부서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V. 학생의 의무

각 학생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일 때, 본 문서에 명기된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기술된 책임을 위반한 경우 규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학생은 자신과 사회를 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학교에 정기적으로 제 시간에 출석하고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2. 필요한 준비물을 갖춰 수업에 임할 준비를 하고 교과서 및 기타 학교 기기를 주의하여 다룰 의무;
3.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과 관련하여 학교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흥기, 불법 약물, 규제 물질 및 술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하는데 일조할 의무;
5.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품행 보이기
6.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의무
7.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삼갈 의무;
8. 학교 자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사적 또는 공동 소유물을 존중해야 할 의무;
9.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체중, 시민권/체류신분, 성적 성향, 신체 및 정서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및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대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동을 삼가 할 의무;
10.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의무;**
11.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이해 증진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할 의무
12. 분쟁 해결에 있어 대결을 피해야 할 의무
13.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의무;
14. 학생회를 학생 참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긍정적인 지도력을 제공할 의무;

15. **교직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관심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무;
16. 책임 있는 저널리즘의 윤리 규약을 준수할 의무;
17.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삼가할 의무;
18.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의무;
19. 질서 있게 모임을 갖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
20.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개인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올 의무;
21. 학교 체육관, 체육 수업, 실험실 및 작업실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의무
22. **학교 징계 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의무**
23. 동료 학생들에게 정해진 학교 방침과 관례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리더십을 제공할 의무;
24. 학습 진척도, 사교 및 교육 행사 등 학교와 관련된 사안을 부모에게 알리고, 교직원으로부터 받은 학부모에게 전달해야 할 연락 사항을 반드시 부모에게 전해야 할 의무.

주제발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허 창 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인권보호팀장)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허창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인권보호팀장)

1. 학생인권조례의 이해

○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해, 학생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자치법규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권리가 아니라 이미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학생의 인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행정을 수행케 하기 위한 교육행정직무조례’의 성격도 갖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 존중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23년 7월 현재 7개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해 시행하였고, 이어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가 연이어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추가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가 제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2023년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학생인권에서 시작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연번	지역	학생인권 관련 조례 명칭	제정일
1	경기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2010. 10. 5.
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2011. 10. 28.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2012. 1. 26.
4	전라북도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2013. 7. 12. 2023. 4. 28.
5	충청남도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2020. 7. 10.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2021. 1. 8.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2021. 4. 12.

○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학생인권보장 기구의 설치, 학생자치 활성화와 참여기구 설치,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제도 등을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권리목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교육현장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인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 원칙	비차별의 원칙 (협약 제2조)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협약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협약 제6조)	생애시기에서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참여의 원칙 (협약 제12조)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본 권리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ex, 깨끗한 공기와 음식, 안전한 장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구분	내용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분,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 괴롭힘, 신체적·정서적 혹은 성적 학대, 전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ex,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ex,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을 갖고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할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 현재 각 지역에서 조례에 담고 있는 학생 인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영역	주요 내용
차별금지	-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 - 체벌 및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언어폭력 금지 - 학생안전 조치 등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권 보장,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학생선택권 보장, 휴식권 보장
사생활의 자유	-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 개인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금지,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검사 금지, 합리적 이유 없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 성적·징계 사실 등 개인 신상 정보 보호, 학교 밖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등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교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사표현 제한 금지, 교내·외 정치활동 및 집회 참여 제한 금지 등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동아리 활동, 학급회, 학생회 활동 적극 보장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보장 등
적법한 징계 절차	- 부당한 상·벌점제 제도 운영 제한 - 징계과정에서의 해당 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 및 구제 - 상담 및 구제 신청 제한 금지 및 이를 이유로 한 징계 금지 등

○ 학생인권조례가 꼭 필요한가?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학생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삶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제도가 정비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무효로 선언하거나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결과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⁷⁾

첫째,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에서의 자율적인 노력들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객관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법이 사회생활의 틀이 되듯이 조례 역시 해당 지역과 학교에서 틀이 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마다 가지는 인권에 대한 관념과 의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둘러싼 갈등 또는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객관화된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단순한 자발성에만 의존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인권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고 근본적인 틀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권을 강조해도 현장에서 종래의 인권 침해적 방법을 사용할 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인권보장은 단순한 수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규제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교육을 교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와 사회 모두가 관여하여 하는 것이라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관심이 교육현장에 들어가고 사회적 요구가 교육에 반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실현인 셈입니다.

넷째, 인권조례를 만든다고 교육이 어려워지거나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학생의 교사 폭행, 교실 안의 혼란 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인권침해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합니다.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교사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과 징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율을 강조하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단순한 교육의 대상이 아니며 교사의 교육권 역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권리라는 점⁸⁾을 생각하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택하라는 요구가 결코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오동석 (2010).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과제」. 『2010 한일 국제 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외. 46쪽.
8) 대법원 선고 2005다25298 판결, 2007. 9. 20., 헌법재판소 89헌마88 결정, 1992. 11. 12.

다섯째, 조례가 가진 생활밀착성 때문이다. 조례는 헌법이나 법률에 비해 위계는 낮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비해 권리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를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주민(학생)의 입장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비해 훨씬 실효성이 있는 법규범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이해

○ 학생인권조례는 국내의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범주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 보장 등)에서는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법률체계 내에서 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이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습자로서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법률에서 인정하는 학생 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이념화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

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인권의 이념입니다.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인권의 이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념화하려는 것은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특정 정치를 선동하거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의무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

학교에는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이미 학생인권 보장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인권 실현과 관련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3중 의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학교 역시 인권에 대한 ‘3중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중 의무는 인권의 존중(respect), 보호(protection), 실현(fulfillment)의 의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존중의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둘째,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합니다. 셋째, 실현의 의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의 마련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따라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존중의 의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방해요소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을 불허하여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 위험한 놀이시설을 방치하는 일 등은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합당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입증 없이 두발규제 등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교칙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는 조치에 해당한다.

<보호의 의무>

학교는 제3자에 의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나 친구·선후배에 의해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해결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학생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일, 수련회 장소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점검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학생을 노출시키는 일 등은 보호의 책무 위반에 해당한다.

<실현의 의무>

인권은 모든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향유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학생 인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생이 알아야 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 인권에 관한 교육과 행사를 기획하는 일, 학생 인권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학교가 실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야 할 책임도 아울러 갖는다.

○ 학생에게는 학습권만 보장하면 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습권의 본질적 의미를 잘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권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공부할 권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학습할 권리는 ‘교육받을 권리, (부당한)교육을 거부할 권리,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 참여할 권리 등 학습자가 자아실현을 위해 배우는 모든 것’으로 정의됩니다.

더구나 유네스코에서는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 교육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과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제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 1985년 3월, 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학습권은 학습자에게 성장에 필요한 모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학습권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권리, 학교에서 경험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해하고 체득하는 모든 것이 학습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은 학습권의 본질적 의미를 잘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학생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방임’과 ‘방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나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고 책임을 동반한다는 ‘상호의존성’이 있습니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교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와 함께 뒤따르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물론 권리는 책임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에 따라 권리의 행사에도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2항에서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책무 부분에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는 반면,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권리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위임 없이도 가능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세부적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의 관계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지 상생의 관계입니다.

학생의 인권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교권은 법률상의 직무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권 자체가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적 직(무)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사를 학생 인권의 잠재적 침해자가 아니라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1차적 옹호자 내지는 지원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교권이 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학생 인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교권

추락을 얘기하기 전에 수단(교권)과 목적(학생인권)이 전도되는 상황은 없었는지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

교권 침해는 학부모와 동료 교직원에게 의해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자체 상담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학생보다는 다른 교직원이나 학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2021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2. 5.) 물론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교권의 보호는 학생인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교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학생인권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조치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교사는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고,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학생인권 또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절차는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와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가 은폐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는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은폐의 가능성이 낮고, 긴급분리도 학교의 특성상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무조건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조사 및 판단을 한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보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처리에 대한 절차를 보완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학생인권과 아동학대 신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학생인권조례로 처벌받는 교사가 양산되고 있다?

학생인권 구제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조사 등 구제 조치는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나 제도,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감사나 수사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구제는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 중재를 하는 ‘조정자’를 지향하고 있으며, 처벌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의적, 반복적,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와 학생인권조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력수준’을 의미합니다. 학생의 기초학력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초학력이 미달하거나 떨어지는 현상은 매우 주의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미흡합니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4. 25.) 이보다는 기초학력 미달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① 지나치게 어려운 교과서 ②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의 문제 ③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미비 ④ 과밀학급 등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의 이유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문제, 사교육과 공교육의 불균형 등 우리의 교육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연구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단일한 속성으로 구성되지도 않고, 각자가 다양한 위치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와 상황,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 역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개인,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또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맨 처음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숫자가 급증했다는 자료가 있지도 않습니다. 혐오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

어떤 학생도 차별받아서 안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인류에게 매우 고귀한 과정이고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단계에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임신과 출산이 함부로 장려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도 당연히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가진 곳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든 학생이 임신과 출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퇴학 등 교육 기회의 박탈, 혐오 등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교육 기회가 박탈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규범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다만, 종립학교에서 종교 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 관련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극 보장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이 자신의 종교 또는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 관련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

학교에서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전자기기와 관련해 소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전자기기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기준을 마련해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 이상의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특히 휴대전화를 이제 단순하게 통신기기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신은 기본이고, 학습, 여가, 금융, 문화, 스포츠 등 현대사회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거 또는 사용 금지 등 제한과 통제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용과 에티켓을 강조하는 방향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에게는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에게 수업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다른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교사의 지도활동에 따를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방해할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학생지도권이 교사에게도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를 신설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해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업방해 행위가 학생인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교사는 당연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2023. 2. 23.)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업방해 행위에 대해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학교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도 연결됩니다. 수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려고 해도,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교육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인 학교생활규정을 간섭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위규범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의 규칙)에서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서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교생활규정을 정할 때는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반영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학교생활규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담은 학교생활규정을 운영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학교생활규정을 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소지품 검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가방이나 호주머니 검사를 생활지도라는 명분으로 빈번하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인격권 침해, 때로는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를 ‘안전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분리된 공간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절차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서도 소지품 검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대응 활동을 하는 수사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데,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기관에서 무분별한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방치된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

교폭력 처리 절차에 학생인권조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로부터의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의 폭력에서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지 않거나 방치한다면 오히려 학교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학생인권조례만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외에도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인권문제를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특성상 훈련을 이유로 학습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예비노동자들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편의지원, 교육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별로 1개에서 3개까지 입법하는 등 편차는 있지만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습 선택권과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방과후나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 학습 강제 상황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습 선택권은 중요한 학생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의 조례를 통해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학습 선택권 보장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혼모·부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미혼모·부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개별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4곳이고, 이들 지역이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답인가?

○ 학생인권, 정말로 과잉일까요?

학생인권 구제(상담 및 조사)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 각 교육청에 접수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의 주요 유형은 여전히 언어폭력, 학습 강제, 체벌, 전자기기 사용 규제, 부당 징계, 차별, 용모 규제, 사생활 침해 등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과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들이 도구를 활용해 막무가내식의 체벌을 하거나, ‘바리깡’을 들고 머리를 밀거나, 혹은 자를 들고 치마 길이를 재는 방식의 용모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흡연 몇 번 하였다는 이유로 퇴학을 시키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학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방법 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모 관련 규정 자체가 과도한 경우는 있어도 교사가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또 욕설이 난무하는 폭력적인 언사가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 따른 인격권 침해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적 행동에 개입할 필요가 분명하거나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교육을 가장한 폭력보다는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실수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의 유형은 아주 고전적인 인권침해 유형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교육당국이나 교사들도 학생이 인권의 주체이고, 학교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은 학업성취도, 대학 입시라는 근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포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성적’이라는 지상과제가 버티고 있고, 이 때문에 통제와 단속 위주의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많은 것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은 냉정하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코로나19로 등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을 때, 사람들은 “학생인권 침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학생인권 침해 유형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학생은 학생답게 자유로운 머리를 합시

다. 학생은 학생답게 개성 있는 복장을 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잘 쉽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체벌 폭력을 거부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 규칙을 잘 바꿉시다.”라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 전단지가 얘기하는 ‘학생답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학생인권이 필요 이상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 전라북도교육청의 실험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두고 2023년 4월 28일(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개별조례인 학생인권조례 위에 기본조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 보호·증진 사업, 제3장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등 25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보장의 범위를 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으로 확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과 교원, 직원이 보장의 대상입니다. 교원과 직원의 인권 침해도 구제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의 보장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단계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2년 12월 27일 (가칭)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의 자료집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논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제19대 전라북도교육감 공약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담긴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전북 교육에서 학생 인권 의식이 많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학교 교육의 중심인 교사의 인권 및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날로 늘어나는 교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9월,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100인이 함께하는 원탁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는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과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권 의식을 확인하는 한편, 교원과 학생 모두의 인권 존중이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

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한 “전북 학생·교원 인권옹호를 위한 실천 방안”정책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교권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처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부서 설치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입니다.

또한 인권교육을 시행함에 학생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등의 균형 잡힌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였습니다.

2.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논의를 시작하며

앞서 말씀드린 공청회, 원탁회의, 정책 연구의 결론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사 인권 나아가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총, 전교조, 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회(’22.10.13.)를 가졌습니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세 단체 모두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보호조례’는 현행 유지에 동의하였고,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두 단체는 찬성, 한 단체는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약간의 입장 차이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세 단체 토론자들이 정리한 토론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학생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 교육청이 없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은 전인미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 내용이 인권 관련하여 선언적이고 보편적일 수밖에 없고, 조례를 실현할 수 있는 인권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 조례의 구속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고해야 할 것은 조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구 설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권 기구 조직 구성입니다. 인권 기구를 기존 학생인권팀 외에 어느 직군까지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기구 위상입니다. 조례 적용 범위 및 대상, 인권기구 조직 구성 등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둘 것인가? 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에 대한 생산적인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보다 건강하고 현실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으며,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인권교육, 인권옹호관, 권리구제 관련 조항만 일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 역시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북교

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나 교육활동 보호 조례의 기본조례 역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등 상황에 따라 개별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구성원 관련 조례가 입법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축소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인권 보장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시선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할 수 있다는 여지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말 답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제 발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제언)

김 지 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교육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에 대한 제언

대표 김지연

(사)한국가족보건협회/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들어가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내포하나 이 자리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 ②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재정을 집행함에 있어 학생, 학급 및 동아리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지원해서는 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동성애 등 모든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 것은 독소조항이다.

1) 성적 지향과 동성애

학생의 모든 성적 지향이 차별없이 공교육 현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학생의 권리라는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모든 성적 지향이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성적 지향 중 동성애와 양성애의 위험성 때문이다.

정의당 장혜영이 2020년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총칙은 다음과 같이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즉 성적 지향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이슈이며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를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同性愛)조항이다. 동성애는 전세계적으로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라고 표현된다. 이는 동성을 향한 성적끌림(sexual attraction), 동성과의 성관계(sexual behavior), 동성애자로서의 성적인 정체성(sexual identity)등을 포괄한다. 흔히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를 이성애, 동성 간 성행위를 동성애, 동성과 성관계를 하지만 이성과의 성관계도 마다하지 않는 형태를 양성애라고 칭한다. 최근 들어 학자들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 총칭하여 성적지향의 일종으로 일컫고 있다.

2) 동성간 성행위의 의과학적 문제점

(1) 남성간 성행위와 간염

2017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에 ‘간염 발생은 주로 유럽 지역 및 아메리카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Hepatitis A outbreaks mostly affecting men who have sex with men European Region and the

America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시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매년 열리는 동성애자 축제가 A형 간염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 시작했다.⁹⁾ ‘A형 간염 확산의 주된 원인은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적 접촉’이라는 사실을 WHO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남성 간 성행위자 간 A형 간염이 발생하는 이유를 ‘간염: 게이와 양성애자에 대한 정보(viral hepatitis: information for gay and bisexual)’라는 제목의 간염 예방 게시물에서 소개하고 있다.¹⁰⁾ 남성 간 성관계 시 대변-구강(fecal-oral)의 직접적 경로를 통해 오염되거나 성행위 시 오염된 손, (성)도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 간 성행위 시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 보니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남성 간 성관계를 할 때는 고무장갑과, 입을 대변(fecal)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를 쓰는 게 낫다는 충격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다.¹¹⁾ 남성 간 성접촉 시 성기와 입, 손을 대변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라는 내용의 문건은 이질 방지용 대국민 전단 형태로도 배포되고 있다.

2017년 봄 영국 보건당국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간보고서에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 2일까지 영국에서 발병된 A형 간염의 74%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였다고 보고했다.¹²⁾ 그렇다 보니 영국 보건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퀴어행사인 ‘스페인 마드리드 게이 퍼레이드’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A형 간염 백신을 맞고 참여하라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¹³⁾

(2) 남성간 성행위와 이질

영국 보건국은 A형 간염이 대변에 오염된 음식물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남성도 성관계 패턴의 특성상 이런 위험한 상황이

9)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 ‘Hepatitis A outbreaks mostly affecting men who have sex with men European Region and the Americas’, 2017년 6월 7일자.

<https://www.who.int/csr/don/07-june-2017-hepatitis-a/en/>

10)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Viral hepatitis-Information for Gay and Bisexual Men>, 2013년 <https://www.cdc.gov/hepatitis/Populations/PDFs/HepGay-FactSheet.pdf>

11)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 Shigella Infections among Gay and Bisexual Men <https://www.cdc.gov/shigella/pdf/msm-factsheet-508.pdf>

12) 영국 보건국(PHE), <Hepatitis A outbreak in England under investigation>, 2017년.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3909/hpr1717_hepA.pdf

13) 영국 공중보건국(PHE) 홈페이지, Hepatitis A among gay and bisexual men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patitis-a-among-gay-and-bisexual-men>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형 간염에 걸릴 위험이 가장 큰 그룹으로 MSM (Men who have Sex with Men), 즉 남성 간 성행위자들을 꼽았다.¹⁴⁾ 이는 공연한 기우가 아니었으며 이미 영국 런던 등 주요 도시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계 보건당국은 이성 간 성접촉에 넣지 않았던 유의사항을 동성 간 성행위 항목에 넣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¹⁵⁾과 영국¹⁶⁾ 보건국이 남성 간 성행위 시 고무장갑(latex glove)을 쓰라고 권하는 것이다. 미국질병관리본부나 영국 공중보건국이 이런 위험성을 공지하는 것은 그들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질이나 간염 같은 대변 유래 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미국 영국 등 보건당국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성행위 특징상 대변에서 유래한 각종 세균이 입으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¹⁷⁾ 남성 동성애자 집단에서 이질이 유행해 보건당국을 긴장시킨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197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질 유행 사건이다.¹⁸⁾ 이후 2001년 10월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세균성 이질 유행이 추가로 보고됐다.¹⁹⁾ 그해 12월 독일의 베를린에선 이질이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했다.²⁰⁾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²¹⁾, 호주 시드니²²⁾에서도 이질이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했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동성애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1999년 이후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에서 발생한 이질은 대부분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었다고 유럽의 질병 조사 기관인 유로서베일런스가 보고하고 있다.²³⁾

14) Ibid.

15)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Shigella Infections among Gay and Bisexual Men>

<https://www.cdc.gov/shigella/pdf/msm-factsheet-508.pdf>

16) 영국 공중보건국(PHE), <Clusters of acute hepatitis A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https://www.bashh.org/media/2733/bashh_phe-letter-10.pdf

17)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 Shigella Infections among Gay and Bisexual Men

<https://www.cdc.gov/shigella/pdf/msm-factsheet-508.pdf>

18) Dritz SK, Back AF. Shigella enteritis venereally transmitted. N Engl J Med 1974; 291(22): 1194

19)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Shigella sonnei Outbreak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 San Francisco, California, 2000-2001>, 2001년.

<https://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5042a3.htm>

20) Robert Koch Institut, Häufung von Shigellose bei Männern in Berlin im Jahre 2001. Epidemiologisches Bulletin 2002(29):243-7

21) Strauss B, Kurzac C, Embree G, Sevigny R, Paccagnella A, Fyfe M. Clusters of Shigella sonnei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British Columbia, 2001. Can Commun Dis Rep, 2001; 27(13):109-10

22) O'Sullivan B, Delpech V, Pontivivo G, Karagiannis T, Marriott D, Harkness J, McAnulty JM. Shigellosis linked to sex venues, Australia. Emerg Infect Dis, 2002; 8(8):862-4.

23) Eurosurveillance, <Cluster of shigellosis in men in Berlin in 2001>, 2002년. <http://www.eurosurveillance.org/ViewArticle.aspx?ArticleId=1862>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남성 동성애자의 이질 중 상당수가 항생제에 내성을 띠게 되어 기존 이질균을 죽이는데 유효하던 항생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²⁴⁾ 이에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내성을 가진 이질균을 막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질 예방 팸플릿까지 게시하고 나섰다.²⁵⁾ 상황이 이렇다 보니 ‘캘리포니아 건강경고네트워크 샌디에이고’는 일단 남성 동성애자가 설사하면 이질이 아닌지 고려해야 한다고까지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는 이질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구강-항문 접촉을 자제하고, 성기와 항문, 성기구, 손 등을 잘 씻으라’고 경고하고 있다.²⁶⁾

영국의 보건당국이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이질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2014년부터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 사이에서 이질이 돌고 있음을 알리고 이들에게 이질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2014년 1월 ‘게이와 양성애자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3년에만 200명 이상의 런던 남성들에게 이질이 전염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접촉을 피하고 청결할 것을 강조했다.²⁷⁾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단순히 손을 잘 씻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성 동성애자의 이질 감염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덴탈댐과 고무장갑을 사용하라는 안전수칙까지 명시했다.²⁸⁾ 덴탈댐은 치과 치료 때 물질이 목구멍 안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의료기구다.²⁹⁾ 보건 당국은 이성간 성관계하는 일반인들에게는 고무장갑을 끼고 성관계하라고 경고하지 않고 있다.

24)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Elevated Risk for Antimicrobial Drug-Resistant Shigella Infect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United States, 2011-2015>, 2016, 22(9)

https://wwwnc.cdc.gov/eid/article/22/9/16-0624_article

25)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Shigella Infections among Gay and Bisexual Men <https://www.cdc.gov/shigella/pdf/msm-factsheet-508.pdf>

26) AHAN San Diego Alerts, ‘Shigellosis among Men in Southern California’, 2017년.

https://www.sdcms.org/Portals/18/Assets/pdf/germ/20170510_CAHAN.pdf?ver=2017-05-12-115601-390

27) 영국 공중보건국(PHE) 홈페이지, ‘Shigella dysentery on the rise among gay and bisexual men’, 2014

<https://www.gov.uk/government/news/shigella-dysentery-on-the-rise-among-gay-and-bisexual-men>

28)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Shigella Infections among Gay and Bisexual Men>

<https://www.cdc.gov/shigella/pdf/msm-factsheet-508.pdf>

29) 치의신문, ‘러버댐 어때요? 환자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2015년 11월 3일자.

<http://www.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1713>

(3) 남성간 성행위와 항문암 및 대변 실금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암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암에 비해 흔하지 않은 항문암이 1975년 이래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국립암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항문암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역시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다.³⁰⁾ 국립암연구소는 항문암 환자가 2018년 신규로 8580명 발생할 것이며, 같은 해 1160명이 항문암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치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암 중에서 2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³¹⁾ 놀라운 점은 항문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핵심 그룹이 동성 간 성관계를 갖는 남성이라는 것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종류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항문암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문암의 주된 원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꼽힌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00% 항문암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문암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국립암연구소는 미국 내외 항문암 환자의 10명 중 9명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³²⁾

우려스러운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항문암이 지나치게 많이 발병한다는 점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타 집단보다 월등하게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³³⁾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 남성들보다 17배 가까이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³⁴⁾ 특수한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2배 이상 특정 질환에 많이 걸린다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문이라는

30)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홈페이지, Cancer Stat Fact :Anal Cancer
<https://seer.cancer.gov/statfacts/html/anus.html>

31) Ibid.

32)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Anal Cancer Prevention - Health Professional Version
<https://www.cancer.gov/types/anal/hp/anal-prevention-pdq/>

33) Quinn GP, Sanchez JA, Sutton SK, Vadaparampil ST, Nguyen GT, Green BL, Kanetsky PA, Schabath MB. Cancer and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Transsexual, and Queer/ Questioning (LGBTQ) Populations, CA Cancer J Clin. 2015 Sep; 65(5): 384-400

34)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 Gay and Bisexual Men's Health-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ttps://www.cdc.gov/msmhealth/std.htm>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룹은 단 하나,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다.

영국의 HIV협회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항문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문암의 90% 이상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항문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³⁵⁾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남성들’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을 포함해 항문암 위험이 큰 남성에게 항문 세포 도말 검사를 시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⁶⁾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400명의 남성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음경암(cancers of the penis)에도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제4회 국제에이즈·악성종양학회에서 앤드류 그루리 박사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항문암의 대부분은 여성 역할을 하는 항문 성교자에게 발생하며 HIV 양성인 게이 남성의 90% 및 HIV 음성인 게이 남성의 65%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³⁷⁾

즉 남성 동성애자들이 위험한 성관계를 통해 일반인보다 HPV에 쉽게 감염된다는 뜻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보건당국은 남성 간 성접촉을 하는 남자들(men who have sex with men)에게 HPV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³⁸⁾

미국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암 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된 ‘전국 LGBT 암네트워크’는 에이즈 양성인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93%가 HPV에도 감염돼 있고, HIV 음성인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는 61%가 HPV에 감염됐지만, 동성 간 성행위를 하지 않는 남자의 HPV 감염은 50% 이하라고 발표했다.³⁹⁾

35) Tong WWY, Hillman RJ, Kelleher AD, Grulich AE, Carr A. Anal intraepithelial neoplasia and squamous cell carcinoma in HIV-infected adults, HIV Medicine 2014;15:65-76

36) 미국 질병관리본부, Human Papillomavirus (HPV)-HPV and Men - CDC Fact Sheet
<https://www.cdc.gov/std/hpv/stdfact-hpv-and-men.htm>

37) Homosexuals Anonymous, ‘Why seek freedom from homosexuality?’
<https://www.homosexuals-anonymous.com/why-seek-freedom>

38)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 Vaccines and Preventable Diseases-Administering Vaccine
<https://www.cdc.gov/vaccines/vpd/hpv/hcp/administration.html>

39) Brewer NT, Terence W.Ng, McRee A, Reiter PL. Men’s beliefs about HPV-related disease. J Behav Med, , 2010, 33(4):274-81.

2012년 한 언론 의학코너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암 발병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이목을 끌었다.⁴⁰⁾ 호주 뉴사우스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2014년 HPV 감염과 항문상피내종양 유병률과 발생률을 연구한 53개 논문을 검토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을 통한 성 접촉을 통해 병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논문 검토 결과 남성 동성애자들이 HPV 감염에 따른 항문상피 내종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4) 남성간 성행위와 대장 건강의 적신호

대장균은 말 그대로 대장에 분포하는 세균 가운데 하나다. 모든 사람의 대장에 사는 대장균은 유전자 조작이 간편하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 분자 생물학 연구 등에서 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에서 최적으로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장균은 그 자체로 크게 유해하진 않다. 즉 대장균은 입을 통해 소화기관으로 들어오더라도 보통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의 터전, 즉 숙주인 인간을 해치지 않으므로써 대장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분변에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위생관리 척도로 대장균 양을 측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영국 공중보건국은 2016년 발표한 보고서 ‘성(性)건강상의 불균형: 런던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와 성병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숙주를 공격하는 독성 물질을 뱉어내는 희귀 대장균이 남성 동성애자의 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⁴¹⁾

인간의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의 일종인 베로사이토크신(verocytotoxin)을 뱉어내는 유독성 대장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는 것이었다.⁴²⁾

어쩌다 대장균이 자기 삶의 터전인 숙주를 공격하는 독성물질을 뱉어낼 만큼 심한 변이를 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대체 어떤 경로로 사람 간에 공유되게 된 걸까.

40) 헬스조선, ‘동성애, 항문상피내종양 위험’, 2012년 3월 27일자.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074 (현재 기사가 삭제됨)

41) 영국 공중보건국(PHE), <Inequalities in sexual health: Update on HIV and STIs in MSM in London>, 2016년.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03706/2016-02-22STIHIVinMSMinLondonFINALv1.0.pdf

42) 영국 공중보건국(PHE) 홈페이지, HIV/STI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03706/2016-02-22STIHIVinMSMinLondonFINALv1.0.pdf

유럽의 감염성 질병들을 조사·보고하는 유로서베일런스는 유해 대장균 균주인 ‘VTEC O117:H7 VT1(이하 VTEC)’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9명의 성인 남성 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9명 중 8명이 남성 동성애자(MSM, Man who have Sex with Man)였다. 43)

개체 수가 9명에 불과함에도 영국 보건당국은 유로서베일런스의 보고를 2016년 공식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희귀 독성대장균의 등장이 보건학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영국 보건당국은 이들 에이즈 감염자 및 다수의 성관계 파트너를 갖는 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성병 감염이 급속한 증가를 하는 것과 관련 있는 양상이라고 보고했다.

베로사이토독신에서 사이토(cyto)는 ‘세포의’라는 뜻을, 독신(toxin)은 ‘독’을 뜻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파괴하는 독성을 가진 물질을 통칭하는 세포 독소의 일종이다. 이는 박테리아 같은 균체가 아니다. ‘균체’가 아닌 ‘물질’ 형태로 독성을 띤다. 이런 독소를 뱉어내는 대장균이 장에 서식한다는 것은 마치 체내의 한 부분이 자체적으로 독성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낸다. 이 독성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Haemolytic uraemic syndrome) 등 각종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4)

VTEC이 발견된 9명은 공통의 음식이나 물, 동물에 노출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음식이나 물이 아닌 ‘남성 간 성행위자’라는 특징만이 VTEC 감염자의 유일한 공통점이었다. 45)

남성 간 성행위자 8명 중 인터뷰에 응한 7명은 전원이 콘돔 없이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자신의 남성 파트너와 가졌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4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GPS기능이 있는 게이 어플 등을 이용해 섹스 파트너를 만났다고 답했다. 어플을 이용해 성행위 파트너를 만나면서 일상생활에선 쉽게 옮기 힘든 대장

43) Simms I, Gilbert VL, Byrne L, Jenkins C, Adak GK, Hughes G, Crook PD. Identification of verocyto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O117:H7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England, November 2013 to August 2014. *Euro Surveill.* 2014;Oct30:19(43).

<https://pdfs.semanticscholar.org/3433/75db3a347fcbd9d4941e33d26414ac3b79cb.pdf>

44) van de Kar NC1, Roelofs HG, Muijtens HL, Tolboom JJ, Roth B, Proesmans W, ReitsmaBierens WC, Wolff ED, Karmali MA, Chart H, Monnens LA. Verocyto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infection in hemolytic uremic syndrome in part of western Europe, *Eur J Pediatr.* 1996 Jul;155(7):592-5

45) Simms I, Gilbert VL, Byrne L, Jenkins C, Adak GK, Hughes G, Crook PD. Identification of verocyto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 O117:H7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England, November 2013 to August 2014. *Euro Surveill.* 2014;Oct30:19(43).

<https://pdfs.semanticscholar.org/3433/75db3a347fcbd9d4941e33d26414ac3b79cb.pdf>

균까지 공유한 것이다. 7명 중 3명은 마약류를 사용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고 답변했다. 인터뷰에 응한 남성 동성애자 중 3명은 에이즈 양성을 나타냈고 치료를 받고 있었다.⁴⁶⁾

이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VTEC 균주가 집중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표본 수가 적어서 해석에 제약은 있지만, VTEC 진단 사례가 매우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영국 태생의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확산된다고 판단했다.

영국 보건당국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위해 각종 예방적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동성애 집단 내에서 각종 세균 감염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이 새로운 균주의 등장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대변 유래 감염 (fecal-oral transmission)을 줄이려는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예를 들면 남성 간 성행위 시 고무장갑을 낄 것, 콘돔을 사용할 것, 치과 보호 기구인 덴탈댐을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미국과 영국의 보건당국의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의 장에서 많이 발견된 VTEC을 두고 영국 보건국은 결코 그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이런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은 보건당국 보고서 문구에 잘 나타나 있다.

“VTEC O117:H7 VT1에 대한 공공보건 활동은 남성 동성애자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고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⁴⁸⁾

(5) 남성간 성행위와 성병

임질(淋疾·gonorrhoea)은 임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이다.⁴⁹⁾ 성기의 점막이 감염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 성관계로 감염되며 음경, 질, 입, 항문 등을 통해 감염된다. 항생제 상용화 이후 임질도 매독과 마찬가지로 발생 빈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46) Ibid, p2

47) Ibid, p3

48) Ibid, p3

49) “임균 감염증 - gonococcal infec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606&cid=51007&categoryId=51007>

남성이 임질에 감염되면 요도염, 부고환염, 전립선염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남성 불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출혈, 소변 시 통증, 하복부 통증 등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으면 골반 내 염증, 불임증이나 자궁 외 임신을 초래할 수 있다. 임질 감염자 중 0.5~1%는 패혈증으로 이어진다.

1985년 미국 웰러 박사는 임질에 걸린 남성 동성애자의 40%가 소화기관인 직장 에서 임질이 발견됐다고 보고했다.⁵⁰⁾ 동성애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그 발병 부위가 성기 주변인 것과 대조적이다.

임질균이 직장염을 초래해 남성 동성애자 등의 항문 성관계 시 HIV에 감염될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2006년 미국 가정전문의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Physicians)는 남성 간 성관계를 통해 임질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하는 임질의 5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이고, 과거 연구에서 동성애자의 15.3%가 임질이었다고 발표했다.⁵¹⁾

남성 동성애자들의 임질 점유율은 샌프란시스코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쳐 높다. 2016년에 발표된 미국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임질의 42.2%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동성애를 하지 않는 일반 남성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이들은 전체 임질 중 25.4%만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임질 중 여성은 32.4%를 차지한다.⁵²⁾ 미국 전역에 2%가량 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임질의 42%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GISP(Gonococcal Isolate Surveillance Project)라는 전국적인 임질 조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GISP의 자료에 따르면 1989년부터 남성 동성애자들의 임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⁵³⁾ 성병클리닉에 방문한 남성 동성애자들의 요로균체 중 40%에서 임질균이 나왔다.⁵⁴⁾

2015년 미국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임질의 87.8%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50) Weller IV. The gay bowel. Gut, 1985 Sep;26(9):869-75
<http://gut.bmj.com/content/26/9/869.full.pdf>

51) American Family Physician, Pharyngeal Gonorrhoea Is Underdiagnosed in MSM, 2007 Jun 15;75(12):1860-1862.
<https://www.aafp.org/afp/2007/0615/p1860.html>

52)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urveillance : STDs 2015>, 2016년.
<https://www.cdc.gov/std/stats15/std-surveillance-2015-print.pdf>

53) Ibid, p81

54) Ibid, p81

뉴욕,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 등 소위 동성애 친화적 도시로 알려진 지역에서 임질이 많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 중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동성애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⁵⁵⁾

2015년 미국에서 임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LA다. 환자 수가 1만7563명이었는데, 10만명당 발병 비율은 173.6명이었다. 샌프란시스코가 10만 명당 524명으로 가장 높았고, 필라델피아는 401.2명, 뉴욕 335.3명 등으로 나타났다. 친동성애 지역일수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⁵⁶⁾ 2013~14년 남성의 발병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발병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성 간 성관계가 임질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⁵⁷⁾

미국 질병관리본부 성병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를 하지 않는 일반 남성이나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성병 감염률이 낮아진다. 반면 남성 동성애자의 임질 감염률은 40세가 될 때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40세가 넘어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다. 여기서 남성 동성애자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일반인에 비해 임질에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인보다 더 긴 생애주기에 걸쳐 성병 환자로 살게 되는 셈이다.⁵⁸⁾

영국 보건부는 공식 주간보고서를 통해 2014~2015년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임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⁵⁹⁾ 임질은 영국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매우 흔한 성병이 돼버렸다. 성건강클리닉을 찾은 남성 동성애자 중 임질이 생식기가 아니라 배설기관인 항문에 나타난 경우는 25%에 달한다.

2015년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서 발생한 임질의 70%는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한 것이었다.⁶⁰⁾ 2016년 영국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에 남성 간 항문성교가 크게 작용했다고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중 15%가 입과 식도를 연결하는 인두 부위에서 임질 감염현상이 나타났다. 이처럼 신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임질균 감염이 일어

55) Ibid, p26

56) Ibid, p106

57) Ibid, p21

58) Ibid, p27

59) 영국 공중보건국(PHE), <Health Protection Report :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nd chlamydia screening in England, 2015>, 2016년. 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59993/hpr2216_stis_CRRCTD4.pdf

60) Ibid, p7

난 남성 동성애자는 10%에 달했다.⁶¹⁾ 성병인 임질의 감염이 배설기관인 항문(25%)과 인두(15%)에서 발생한 경우를 합치면 40%에 해당된다. 동성애를 하지 않는 일반 남성 그룹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특이한 결과다.

유럽 질병예방 및 통제센터는 매년 성병 보고서를 발표한다. 일부 회원 국가들의 현황이 누락돼 있지만 유럽 대륙의 개괄적인 흐름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항생제와 위생 인프라가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⁶²⁾

항생제의 눈부신 발전 속에 임질은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질병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임질 전파는 세계 여러 지역의 임질 감염률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5) 남성간 성행위와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1970년대 남성 동성애자 그룹을 치료했던 의료진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이들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에이즈라고 부르고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임을 알지만, 그 당시엔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1960~70년대 남성 동성애자에게 구강 칸디다, 카포시 종양, 카리니 폐렴 등 다수의 병증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이것이 진균증인지 암인지 박테리아성 질환인지 종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걸리며 일반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종의 증후군이나 암의 일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다.

1981년 6월 5일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 중 비교적 희귀한 형태의 폐렴인 카리니 폐렴에 관한 최초의 경고를 발표했다.⁶³⁾

같은 해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암의 일종인 카포시 육종이 훨씬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했다. 처음에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질병

61) Ibid, p6

62) 유럽 질병관리본부(ECDC), Gonorrhoea - Annual Epidemiological Report for 2014
<https://www.ecdc.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Gonorrhoea%20AER.pdf>

63)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First Report of AIDS>, 2001년.
<https://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5021a1.htm>

을 ‘게이 암(gay cancer)’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GRID(gay related immune deficiency, 게이 관련 면역 결핍증)로 이름을 변경했다. 그해 뉴욕타임스는 이런 질병 확산 현상을 “41명의 동성애자들에게서 보인 희귀한 암(Rare cancer seen-in 41 homosexuals)”이라고 대서특필했다.⁶⁴⁾

이후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수많은 연구 끝에 이 새로운 질병이 암이 아닌 전염병이라고 선언했다. 때마침 1983년 프랑스의 뤼크 몽타니에 박사팀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다.⁶⁵⁾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9쪽에는 “동성 간의 성접촉이 우리나라에서 HIV 확산의 가장 흔한 경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70쪽에는 “동성애자 중에서의 HIV 양성률이 성매매 여성들에서보다 훨씬 높은 우리나라의 역학적 현황을 고려한다면 콘돔 배포 활동은 남성 동성애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⁶⁶⁾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확산의 주된 그룹이 남성 동성애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발표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1~2015년)’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그룹은 제1순위 에이즈 고위험군이다. 또한, 471쪽에는 남성 동성애자의 콘돔 사용률과 에이즈 검사률을 높이는 것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⁶⁷⁾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립한 에이즈 퇴치의 주된 사업명은 ‘16-가. 남성 동성애자 대상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및 검진상담소 운영사업’이다. 즉 국가의 에이즈 예방 사업명에 아예 ‘남성 동성애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 사업의 구체적 목표가 국내 남성 동성애자 그룹의 콘돔 사용률을 60%로, HIV 검사수검률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⁶⁸⁾

특히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16~2020년)’에는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64) The New York times, ‘Rare cancer seen-in 41 homosexuals’, 1981년 7월 3일자.

<https://www.nytimes.com/1981/07/03/us/rare-cancer-seen-in-41-homosexuals.html>

65) 국립보건원, < HIV/AIDS 관리지침>, p13, 2002년.

66)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2014년.

67)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15)>, 2010년.

68) Ibid, p471

번지는 에이즈 감염 실태가 고스란히 나온다.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가 밝혀진 사례의 대부분인 99%가량은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였음. 그중 이성 간 성접촉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의 비는 대략 6:4(3364명:2216명)로서 이성 간 성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나 전체 HIV감염인의 91.7%가 남성임과 동성애자 역학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됨.”⁶⁹⁾

또한, 종합계획 331쪽에는 “우리나라는 (에이즈 감염이) 남성 동성애자 중심의 국소적 유행을 보이므로 남성 동성애자를 목표 집단으로 하는 예방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남성 동성애자들의 HIV감염률이 일반 성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국 HIV/AIDS 코호트’에 등록된 HIV감염인을 조사해 분석한 자료가 공개됐다. 김준명 최준용 감염내과 교수 등이 에이즈 감염인 1474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 에이즈 감염인의 71.5%가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 그룹이었다. 특히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간 성접촉을 하는 그룹이었고 이성 간 성접촉만 한 그룹에 의한 비율은 7.1%에 그쳤다.⁷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보건당국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주요 사업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 행태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 체계 정비’를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동성애자 등의 안전한 성행동 실천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상담’을 에이즈 예방 사업에 넣어냈다.⁷¹⁾ 한국 보건당국이 남성 동성애자의 성 행태 감시체계 정비를 중시여기고 있음을 아는 국민은 적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국가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HIV감염 대부분이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HIV/AIDS 유행의 초기 단계다.⁷²⁾

69)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 p323, 2015년.

70) 김준명, 최준용, 정우용, 성혜, 김신우, 김우주, 최희정, 김민자, 우준희, 김윤정, 최보율, 최윤수, 기미경, 김기순, 한국 HIV/AIDS 코호트, <국내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의 감염 경로: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 Korean Journal of Medicine. 2018;93(4):379-386
<http://ekjm.org/journal/view.php?number=25545>

71)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6~2020>, p328, 2015년.

72) 질병관리본부,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 보고서>, p30, 2014년.

그렇다보니 감염내과 교수와 보건소 직원 등 에이즈 전문인 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전략의 주된 사업대상에 대해 남자 동성애자(100%), 성매매 종사자(95.5%), 이주민·외국인(91.3%)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다.⁷³⁾ 즉 국가 에이즈 예방 및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동성애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보고서는 “역학적 현황의 세부 이슈별 해결 우선순위 가중치 종합 점수에서도 ‘남자 동성애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신규 HIV감염’이 압도적 1위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⁷⁴⁾

방지환 서울시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15년 국민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정황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들이 에이즈의 ‘진원지’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면서 “MSM(Man who have sex with Man·남성과 성접촉을 하는 남성)이 가장 명확한 에이즈 감염 위험군이기 때문에 MSM과 그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⁷⁵⁾

백신도, 완치제도 없는 질병일수록 감염경로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정확하게 알려 예방에 힘써야 한다. 안타깝게도 오로지 에이즈만 성역화하고 진실은 덮어두자는 위험한 인권 논리가 한국사회를 덮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핵심 집단으로 남성 간 성행위자(MSM, Men who have sex with men)를 꼽았다. WHO는 그 외에도 마약 주사기 이용자, 성매매 종사자, 성전환자 등을 고위험군에 포함시켰다.⁷⁶⁾

미국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2013년 5400명이 신규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50개주 중에서 최고치에 해당한다. 플로리다주 보건당국은 이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룹으로 남성 간 성접촉자를 꼽았다.

73) Ibid, p114

74) Ibid, p121

75) 국민일보, “에이즈, 남성 동성애자 사이 주로 유행하는 질병’ 근거 또 나왔다’, 2015년 6월 23일자.
<http://m.kmib.co.kr/view.asp?arcid=0009577568#RedyAi>

76) 세계보건기구(WHO) 홈페이지, HIV/AIDS - Publications on HIV
<https://www.who.int/hiv/pub/en/>

비단 플로리다주뿐만 아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보고서에서 전체 미국 인구 중 2%를 차지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전체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의 약 70% (almost 70 percent 라고 되어 있음) 를 차지한다고 밝혔다.⁷⁷⁾

HIV 감염 경로가 남성 간 성행위로 쏠리는 현상은 청소년층에서 더욱 뚜렷하다. 미국 보건당국이 에이즈 바이러스, 즉 HIV에 감염된 13~24세 총 7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92%에 해당하는 6916명이 남성 간 성행위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밝혔다. 남성 간 성행위 및 마약 주사기 사용으로 에이즈에 걸린 그룹 228명까지 합하면 13~24세 에이즈 감염자 중 무려 94.8%가 남성 간 성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⁷⁸⁾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에 걸리기 쉬운 가장 위험한 행위는 남성 간 성행위 중 ‘바터밍(Bottoming)’, 즉 수용적 성행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⁷⁹⁾

2012년 7월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MSM 중 15%가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남성 동성애자 6~7명 중 한 명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말이다.⁸⁰⁾

영국 보건당국 역시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 HIV 감염 고위험군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2012년 영국 보건당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20명 중 1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일반인 667명 중에 1명이 에이즈에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⁸¹⁾

2015년 봄, 영국 보건국은 ‘남성 간 성관계자의 건강 불균형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⁸²⁾ MSM이 에이즈와 기타 성병에 가장 많이 걸리

77)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IDS info, HIV/AIDS News, ‘CDC Leading New Efforts to Fight HIV Among Gay, Bisexual Men and Transgender People’, 2015년 3월 31일자.

<https://aidsinfo.nih.gov/news/1554/cdc-leading-new-efforts-tofight-hiv-among-gay-bisexual-men-and-transgender-people>

78)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 HIV Surveillanc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2016년.

<https://www.cdc.gov/hiv/pdf/library/slidesets/cdc-hiv-surveillance-adolescents-young-adults-2016.pdf>

79)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 HIV/AIDS - HIV Transmission- Can I get HIV from anal sex?

<https://www.cdc.gov/hiv/basics/transmission.html>

80) Medscape, ‘Lancet Series Covers HIV/AIDS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2012년 7월 23일자.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767922>

81) 영국 공중보건국(PHE) 홈페이지, PHE responds to health inequalities facing gay, bisexual and MSM, 2014년.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e-responds-to-health-inequalities-facing-gay-bisexual-and-msm>

82) 영국 공중보건국(PHE) 홈페이지, PHE action plan tackles health inequalities for men who have sex with men

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영국 보건당국은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기타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라는 행동계획서까지 발표했다.⁸³⁾

2016년 발표된 영국 보건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북아일랜드에서 에이즈 감염인 중 약 60%가 동성 간 성관계로, 약 40%는 이성 간 성관계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영국 통계청은 남녀 동성애자 인구가 전체 인구 중 약 1.7%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남성 동성애자만 따지면 그 수치는 더욱 줄어든다. 이 소수의 남성 동성애자가 전체 에이즈 감염자 중 60%를 차지한다는 말은 성적취향에 따라 에이즈 감염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임을 알 수 있다.⁸⁴⁾

영국 가디언은 2013년 7월 태국 방콕의 남성 동성애자들의 31%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⁸⁵⁾ 즉 태국은 3명의 남성 동성애자 중 한 명이 이미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말이다. 1996년 28%에 달했던 태국 윤락 여성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률이 2011년 1.8%까지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엔 산하 에이즈관리국(UNAIDS)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남성 동성애자 중 무려 11.3%가 HIV 감염인이다. ⁸⁶⁾ 쉽게 말해 스페인 동성애자 9명 중 1명이 에이즈에 걸려 있는 것이다. 유엔은 또한 호주 MSM의 16.5%가 이미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발표하고 있다.⁸⁷⁾ 호주 남성 동성애자 6명 중 1명은 이미 에이즈에 걸려 있다는 의미다.

에이즈 확산 6단계에서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캐나다 등은 남성 동성애자가 그 주된 전파경로가 되는 제1단계에 해당된다. 그렇다 보니 에이즈에 걸린 남녀의 성비

<https://www.gov.uk/government/news/phe-action-plan-tackles-health-inequalities-for-men-who-have-sex-with-men>

83) 영국 공중보건국(PHE), <PHE action plan 2015-16 Promoting the health and wellbeing of gay, bisexual and other men who have sex with men>, 2015년.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68857/PHEMSMAActionPlan.pdf

84) Public Health Agency, <HIV surveillance in Northern Ireland 2016>, 2016년.

https://www.publichealth.hscni.net/sites/default/files/HIV_report_2016_0.pdf

85) The guardian, ‘Addressing HIV prevalence among gay men and drug users in Thailand’, 2013년 7월 1일자.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professionals-network/2013/jul/01/hiv-prevalence-gay-men-drug-users-thailand>

86) 유엔에이즈(UNAIDS), <UNAIDS DATA 2017>, p224, 2017년.

http://www.unaids.org/sites/default/files/media_asset/20170720_Data_book_2017_en.pdf

87) 유엔에이즈(UNAIDS), <UNAIDS DATA 2017>, p79, 2017년.

http://www.unaids.org/sites/default/files/media_asset/20170720_Data_book_2017_en.pdf

울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아프리카처럼 에이즈의 역사가 길고 가난하며 이미 1단계를 지나 에이즈 확산 최종단계인 6단계에 이른 나라들은 에이즈에 걸린 남녀노소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성전환 등 모든 성별정체성을 포함시킨 것은 독소조항이다.

1) 성별 정체성과 성전환

정의당 장혜영이 2020년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총칙은 다음과 같이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과연 모든 성별 정체성 즉 성전환이 의과학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제도상의 성별 정정을 하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도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는 성전환 옹호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고 할수 있다.

2) 성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하는 몇가지 생물학적 사실들

- 염색체

사람의 성별은 언제 결정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별이 결정된다. 염색체는 쉽게 말해 세포핵 안에 있는 실과 같은 구조로 된 유전 인자를 운반하는 핵심 물질이다. 정자는 X염색체나 Y염색체를 운반하는 반면, 난자는 모두 X염색체를 운반한다. 난자가 X염색체 정자와 수정되면 태아는 X염색체가 두 개인 태아, 즉 XX염색체를 가진 여자가 된다. 반대로 난자가 Y염색체 정자와 수정되면 X염색체와 Y염색체가 각각 1개씩인 태아, 즉 XY염색체를 가진 남자가 되는 것이다. 모든 태아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22쌍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 하지만 성별을 결정하는 23번째 염색체의 경우, 여자는 XX, 남자는 XY로 서로 다르며, 우리는 이것을 '성염색체'(性染色體, chromosome)라고 구분하여 부른다. 그리고 이 성염색체인 X염색체와 Y염색체는

완전히 다르다. 생물학적 성별의 결정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염색체는 남녀의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 성염색체는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Y염색체 안에 있는 특별한 유전자는 남성의 성적 발달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생물학적 남성성을 결정한다. 또한 성염색체는 태아 발생 초기에 난소와 고환의 생성을 결정하고 발달시킨다. 즉, 남녀의 생식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 남녀의 성징(性徵)이 뚜렷하고 질서 정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를 통해 남자에게는 남자임을, 여자에게는 여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신체의 모든 세포 안에 뚜렷하게 심겨져 있다. 어떠한 인위적 기술로도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유전자의 힘이자 생명 탄생의 릴레이를 이어가는 생태 질서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성별에 관한 얘기를 해줄 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남녀의 성염색체 이야기를 해 줄 것을 권한다. 성인의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개수는 약 37~100조 개에 이른다. 적혈구와 같은 특수 세포를 제외한 ‘핵’을 가진 모든 체세포 ‘핵’마다 XX 또는 XY 염색체가 있고, 이것들을 송두리째 갈아끼울 의술은 없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세포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cell) 안에도 남녀 성별 차이가 담겨져 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세포란 건물을 이루는 기본 재료인 벽돌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 남녀의 중요한 생물학적 차이가 세포 수준에서도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세포의 나노입자 흡수율이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수련 기관인 브리검 여성병원과 UC버클리 대학교, 스탠퍼드 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나노입자를 흡수하는 데 있어 성별에 따른 세포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나노입자는 나노의학에서 약물 전달에 활용되는 핵심 매체다. 연구팀은 세포의 성(性)이 나노입자를 흡수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세포의 다양한 분화 능력 향상을 위한 재프로그래밍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세포가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의사인 모르테자 마무디(Morteza Mahmoudi) 박사는 남녀 세포가 의학적으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장기간 나노 연구를 해 온 것이 의학계의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생식기관

수정 당시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에게 된 고유의 성염색체는 태아 발생 초기에 정소(일명 고환) 또는 난소의 발생을 결정한다. 태아가 발육하는 동안 이러한 생식선, 즉 난소와 정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따라 나머지 모든 성징의 발현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성에게는 자궁과 난소가 있다. 한 쌍의 난소는 두 개의 나팔관 끝에 붙어 있는데, 이 난소는 자궁과 연결되어 있다. 자궁의 아래쪽, 질의 윗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는 자궁 경부가 있다. 질은 신체 외부와 연결되는 10cm가량의 통로이다. 여성에게만 있는 난소에서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estrogen)과 난자를 만들어 낸다. 이로 인해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난소는 또한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도 분비한다.

반면, 남성은 정자를 생산하는 정소와 정낭, 전립선 등을 가지고 있다. 고환을 가지고 있는 남성만이 정자를 생산할 수 있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도 고환에서 생성된다.

- 성호르몬

성호르몬은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은 여성과 남성 각각의 고유하고 대표적인 성호르몬이다.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의 생식샘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생식기관 발육, 기능 유지, 이차성징 발현 등에 관여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호르몬은 특유의 작용으로 인해 성별에 따른 정신적인 차이도 유발한다.

물론 부신(副腎)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남녀 모두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소량씩 분비하기도 한다. 차이점은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는 속도가 남성에게서 좀 더 빨리 분비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성호르몬은 헤모글로빈의 생성 속도, 근육의 생성 속도, 피하 지방의 양 등 신체 곳곳에 무수히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작용한다. 프로게스테론은 부신에 의해 생성되어 여성이 임신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신장

한국인들의 영양 상태 개선 등으로 인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평균 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20~69세 한국인 6,839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표된 20~69세 성인 전체 측정치를 평균 낸 값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성 평균 키는 172.5cm며, 여성은 159.6cm다.

1979년 1차 조사와 비교하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으며, 2015년에 비해서도 평균 키가 0.5cm, 1.3cm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이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평균 키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남녀가 뚜렷하게 평균 키 상승을 이루고 있지만, 남녀 간의 키는 차이가 분명하다. 30대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의 평균 키가 174.9cm이고, 여자는 161.9cm다. 남녀의 평균 키 차이가 13cm나 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 키가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 남녀의 옷 생산라인 등 키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 체중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평균적인 체중의 차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현저히 드러난다.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은 평균 25kg, 여학생은 24kg이다. 초등학교 4학년은 남학생 38kg, 여학생 35kg이며, 6학년은 남학생 49kg, 여학생 46kg이었다.

중학생이 되면 남자와 여자의 체중 차이가 좀 더 벌어진다. 중학생 남자 기준 1학년 54kg, 2학년 60kg, 3학년 64kg이며, 여자 기준으로는 1학년 50kg, 2학년 53kg, 3학년 55kg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 기준 1학년 67kg, 2학년 69kg, 3학년 71kg이었으며, 여자는 1학년 56kg, 2~3학년은 57kg으로 확인된다.

어른들의 경우, 남성은 신장 178cm를 기준으로 20대의 평균 몸무게가 63.79kg이었으며, 30대는 71.1kg, 40대는 69.9kg, 50대는 68.4kg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키 160cm를 기준으로 20대의 평균 몸무게는 52.17kg, 30대는 54.3kg, 40대는 55.87kg, 50대는 55.97kg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의 체중 차이는 남녀의 평균 키, 남녀의 평균 근육량, 남녀의 평균 피하지방량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근육

일반적으로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등의 영향으로 같은 양의 근육운동을 하더라도 여자보다 근육이 더 쉽게 발달한다. 남자는 체중 대비 근육량이 여자보다 10% 이상 많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 특히 일상사에서 쉽게 직면하는 근력 하나만 봐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종 상황이나 대상 앞에서의 힘에 관련된 역동이 다르다. 한 예로 무거운 택배가 집에 배달됐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그 택배 앞에서 일으키는 역동은 다르다. ‘어떻게 이것을 집 안으로 들여놓을까?’ 하는 생각은 근력의 차이와 유관하게 나타난다. 택배뿐 아니라 모든 집기류 혹은 세상의 모든 무게 나가는 것들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 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두뇌이다. 신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머릿속을 안전을 위한 단단한 두개골이 만들어져있다. 두개골 안에 아무 물질이나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혈액뇌장벽(BBB, Blood-Brain Barrier)라는 장치가 조성되어있고 그 안에 뇌가 조성되어있다.

모든 장기가 중요하지만 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뇌는 셀 수 없이 다양하게 연결된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곽을 둘러싼 세포층인 피질은 감각, 지각, 사고, 기억의 저장고이며, 몸의 운동을 관장한다. 뇌의 안쪽에는 감정, 육체적 욕구, 체온, 대사율, 각성 수준을 관장하는 다른 세포 체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모든 영역은 촉진, 금지, 피드백 작용의 놀랍도록 복합적인 조합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최근 많은 뇌 과학자가 두 뇌 기능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영성 상담학으로 유명한 목회자이자 의학자인 제럴드 메이(Gerald May)는 “뇌는 아마도 인간의 영적 경험에 대한 육체적인 매개체일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4)

성호르몬은 이차성징의 일환으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베데스다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연구원들은 남녀의 뇌 스캔을 비교하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했다. 그들은 Human Connectome Project(HCP)의 일환으로 976명의 뇌의 형태와 활동을 조사하고 성인 남녀에 대한 뇌 스캔을 평가했다. 과학자들은 “성인 뇌는 뇌의 회백

질(활성화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성별 차이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여성의 회백질의 부피는 전전두엽 피질 부분, 상부 안와 전두엽 피질 및 정수리 및 측두엽의 일부에서 더 큰 반면, 남성의 경우 대뇌 피질은 기본 시각 중추를 포함해 뇌 뒤쪽에서 더 두껍다는 것이다. 남성에게서 뇌의 회백질의 양이 많은 부위, 즉 뇌 뒤쪽은 대부분 물체 인식과 얼굴 처리에 관여하고 있다. 반면, 여성의 두드러진 대뇌 피질 영역인 전전두엽 및 정수리 부위는 작업 제어, 충동 제어 및 갈등 처리와 관련이 있다.5)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교 의대 라지니 버마(Ragini Verma) 교수 연구팀 역시 남녀 간에 뇌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6) 8~22세 남성 428명, 여성 521명의 뇌 구조를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의 뇌는 대뇌 좌반구와 우반구를 오가는 연결망 구조가 발달한 반면, 남성의 뇌에서는 각 대뇌 반구의 내부 연결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뇌 연결망 구조의 차이는 남녀 간 사고방식, 즉 분석 위주의 사고 혹은 공감 위주의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와 행동의 차이로 나타난다. 연구팀은 남자 뇌의 구조는 감각인지(perception)와 통합 행동(coordinated action)에, 여자 뇌는 기억이나 직관이나 사회성 등에 더 역동적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물론 성별을 넘어 개인 차이가 클 수는 있으나 이것은 남녀 뇌에 대한 평균적인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뇌의 차이는 뇌질환에도 영향을 준다. 대표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성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남성은 저체중이 대뇌피질 두께 감소의 요인이라고 했다.

- 출산 가능 여부 및 기타 성차

여성은 남자와 달리 아기가 자라는 집인 자궁이 있고, 월경 주기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난자가 난소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다달이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유방도 있다. 남성은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하다.

남자와 여자는 목소리의 높낮이와 굵기 면에서도 차이를 크게 보인다. 변성기에는 성대 길이가 성인 수준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데, 보통 남자는 변성기 전과 비교하여 약 60%, 여자는 약 30% 정도 성대가 길어진다.9) 호르몬의 차이가 성대 길이의 차이로, 그리고 목소리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체지방량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남성호르몬은 근육을 증가시키고 지방의 비율을 낮추는 반면, 여성호르몬은 이와 반대 작용을 한다. 사춘기 이전에는 남녀 모두 신체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이지만, 사춘기가 되어 성호르몬의 분비가 뚜렷해지면 지방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 대체로 남자는 10%로 낮아지지만, 여자는 22%로 높아진다. 여성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는 한 여성의 신체는 지방이 증가하는 성질을 갖게 된다.¹⁰⁾

망막 역시 남자와 여자가 차이점을 보인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보다 두꺼운 망막을 가진다. 그리고 그 망막에 분포한 세포 중 남자는 움직임이나 방향, 속도들을 감지하는 데 더 역동적인 M세포가 많고, 여자는 색깔이나 질감을 식별하는 데 더 역동적인 P세포가 많다. 그러다 보니 남자아이들은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장난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체수분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최근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남자의 몸은 체수분이 62% 정도, 여자는 52% 정도밖에 안 된다. 물론 개체별 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평균값을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체수분율이 훨씬 적다.

남녀 태아는 수정 6주까지 볼프관(Wolffian duct)과 뮐러관(Mullerian duct)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사실상 근본적인 구별이 없이 암수 동체의 형태로 태중에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남녀를 뚜렷하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과감하게 펼치는 이른바 쿼어 성교육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비과학적일 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별 정체성을 혼드는 위험한 교육이다.

남녀의 내부 생식기 자체는 볼프관과 뮐러관의 발달로 최종 완성된다. 남녀 태아 모두 임신 6주까지는 볼프관과 뮐러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타고난 성염색체에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하면 뮐러관의 발달이 정지된다.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 관여하지 않고, COUP-TFII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볼프관의 발달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는 “고환결정인자(TDF), 뮐러관억제인자(MIF, AMH를 가리킴), 테스토스테론, 세 가지가 작용해 배아의 생식원기가 남성으로 성분화되고, 이것이 작용하지 않으면 여성으로 성분화된다.”는 기존 학계 정설을 인용해 왔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COUP-TFII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이 관여해야 여성 생식기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을 악용하여 남녀 성별의 결정이 수정 당시 정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교육되어서는 안 된다. 생식기의 완성이 성별 결정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임신 6주 이후 성기 발달 과정에서 볼프관과 밀러관 중 한쪽은 성염색체에 따라 거의 사라지고, 한쪽은 발달되어 타고난 성별에 맞는 내부 생식기를 갖게 된다. 한쪽 관의 발달이 정지되고 나면 일부 흔적이 남아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볼프관이나 밀러관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핵마다 이미 남자는 XY, 여자는 XX 염색체가 자리 잡고 있기에 수정 3주든, 6주든, 6개월이든 이미 성별은 하나님께서 수정 당시 정해 주신 것이며, 성별이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에 의한 학습이나 진화로 뒤바뀌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아의 세포핵마다 존재하는 성별 염색체와 유전자, 그리고 세포의 차이는 무시한 채 오로지 볼프관, 밀러관에 집착하며 수정 6주까지 남녀 구별이 모호한 암수 동체 혹은 중성적 존재로 남녀 성별을 설명하는 퀴어 성교육자들의 위험한 성교육에 미혹되지 않도록, 양육자들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의학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남녀 간 차이점, 즉 성차(性差)가 과거보다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의학에서 남녀뿐 아니라 개인차를 고려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성별이라는 분명한 차이에 따라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차이는 사회적 · 문화적 학습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애초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이들이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성차의학이다.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할 때, 연구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의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처럼 의학자들이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데, 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사용했을 때 심한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인 셈이다.

1997~2000년 미국에서 치명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켜 판매가 중단된 10개 약물이 있다. 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개 약물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 668개 중 307개의 약에서 성별 간 부작용 차이가 발생했다는 논문도 있다. 똑같은 약품인데도 부작용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 것이다.

과거에는 성차의학이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했다. 인문학에서조차 최근 반세기 동안 남녀의 근본적 차이를 부정하고자 애쓰는 경향이 역력했다. 그러나 최근 생명과학, 의학 분야에서는 성별에 따라 의학적·약학적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협심증, 뇌졸중, 위·식도 역류 질환, 소화불량, 편두통 등 많은 질환에서 남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가 2015년 12월 발간한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별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남녀 성차에 따라 약물동력학적 차이를 보이는 의약품이 명시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세포의 흡수율이 다르면 치료 효과도 다르고, 안전성이나 임상 데이터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사이언스 타임즈』(Science Times)는 남녀 간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포 간의 차이점을 보도하며 ‘남녀유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3) 성정체성 혼란과 무분별한 성전환 시도의 증가 우려

2019년 11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바른 성가치관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하고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쉽게 말해 성별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며, 체세포마다 존재하는 성염색체에 따라 남녀 성별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매우 의과학적이고 자연의 이치에도 맞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일부 동성애 옹호 단체와 급진적 여성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개인이 원하고 느끼는 대로 성별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적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가는 질서가 인간에게 성별을 선택할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자신의 성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만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옹호론자들은 흰동가리의 성별이 바뀌듯이 인간도 성별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바뀔 수 없으며 성염색체 등을 기반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고리타분한 이분법적 성 고정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잘못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면 트랜스젠더들을 향한 폭력적인 표현, 혐오 표현(hate speech)인 양 가르친다.

성별을 고르는 것을 인권에 포함한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교육 현장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다. 이곳에서는 ‘성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성정체성을 가진 친구를 있는 그대로 용인해야 하며, 차별하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가르친다. 위기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은 불안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급진적 젠더 교육에 반대하며 등교 거부 운동까지 벌였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성별이 다른 성별로 바뀌어 버릴까 봐 공포심을 느끼는 아이들이 서서히 생겨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로지라는 아이가 대표적인 예다. 로지는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후 엄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언젠가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로지는 자신의 성별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게 된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들여다보면 이 아이의 공포심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 수 있다.

로지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옛 친구였던 맥스라는 남자아이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맥스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지만, 옆에 있던 친구의 말이 로지를 혼란에 빠뜨렸다. “로지, 저 아이의 이름은 맥스가 아닌 매기야.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됐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남자아이였고 맥스라고 불리던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아니며 여자로 바뀌었다는 말에 로지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했다.

로지는 충격을 추스르기도 전에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맥스를 괴롭힐 마음이 추호도 없었음을 밝혀야만 했다. 정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가 한순간에 여자가 될 수는 없다는 보편타당한 사실을 말했던 로지가 오히려 사과하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로지는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맥스(남자 이름)를 맥스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고 불러요?”, “매기(여자 이름)는 남자보다 여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자 이름으로 불러 주어야 해.” 타고난 성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정한 성별, 즉 성별 정체성이 우선이라는 거짓된 교육을 공교육 현장에서 진행한 것이다.

교장의 잘못된 교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거짓말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로지를 붙들고는 남자였던 맥스가 왜 여자인 매기가 됐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성별을 고를 수 있으며, 사람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성별 또한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런 거짓 교육은 로지에게 씻을 수 없는 악영향을 끼쳤다. 로지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집에 와서 자신의 성별이 언젠가 남자로 바뀔까 봐 무섭다며 엄마에게 울며 매달린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십 대들의 성전환을 점점 허용하다 못해 부모 몰래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교사 연합(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TA)은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위해 부모의 허락 없이도 수업을 빠질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이미 이런 기만적 결의는 2013년 캘리포니아의 일부 교육구에서 벌어졌다. 2016년부터는 미시간에서, 2018년부터는 뉴저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학생이 트랜스젠더 등 어떤 성별 정체성을 주장하더라도 학생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영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뉴스 웹 사이트가 있는데,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 나올지 그냥 타고난 성별대로 살아갈지 자가 진단을 하게 하고 은연중에 성전환을 유도한다. 영국에서는 이런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가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황폐하게 해서라도 이익을 창출하려는 신종 젠더 사업이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영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성별 교체(transgenderism) 사업’이라고까지 불리는 급진적 이론과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대로 영국에서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1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성전환 치료에 의뢰된 청소년이 97명에서 2,519명으로 2,500%가량 늘어났다. 영국의 여성평등부는 성전환 아동이 급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대중매체의 역할에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위험천만한 성전환 수술을 정당화하고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어른들은 젠더 감수성 함양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이 타고난 성별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교육 현장에서 성평등이라는 핑계로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문화 및 교육환경을 조성해서도 안 된다. 이를 아동 인권 존중이라고 주장하는 무책임한 성교육 강사들이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

4) 성전환 시술의 부작용

십 대에 하는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시술은 부작용이 매우 크다. 어른의 성전환과는 달리 이차성징 발현 억제를 동시에 투여하면서 교차 성호르몬을 투여하기 때문이다.

이차성징이 오는 십 대 시기에 보통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보다 혈중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1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 시기 여자 청소년은 난소에서 적극적으로 에스트로젠을 생성해 내며, 여성으로서의 뚜렷한 이차성징을 겪는 것이 정상적인 성장이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 급격한 신체 성장, 면역 체계 구축, 부신 등 중요한 호르몬 장기의 성숙, 활발한 성호르몬 분비로 내분비 계통의 변화 등을 겪는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변화와 성장의 시기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급적 인스턴트 식품 섭취나 고카페인 음료를 자제하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흡연이나 음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성전환을 원하는 십 대에게 그들의 잘못된 희망대로 화학 호르몬을 주입하거나 먹이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거나 부모들에게 자녀 성전환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제하는 교육 시스템은 어불성설이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십 대였던 시드니 라이트는 성전환을 위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요법 이후 찾아온 부작용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녀는 십 대 여자로서 자연스럽게 이차성징을 겪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이 되었다. 그 뒤에는 AB329법(14)이 있었다. 이 법 때문에 교사나 상담사가 성전환을 원하는 라이트의 결정을 제지하기 위해 상담을 했다가는 고발당할 수도 있었고, 바르게 알려 줄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 교사노조 등의 시스템은 시드니의 잘못된 선택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

그 결과 라이트는 비참한 결과를 맞았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과량으로

주입해 내분비계 전반에 교란이 나타났다. 체중이 25kg이나 증가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찾아왔다. 당뇨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직전의 상태까지 신체의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었다. 게다가 십 대 폐경이라는 엄청난 상실을 겪었다. 교차 성호르몬의 부작용은 이외에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라이트는 자신을 망친 것이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라고 부르짖었다.

학생이 우발적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 교사가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시스템,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결의한 CTA, 그리고 성전환을 포함한 모든 성별 정체성을 정상이라고 교육하는 성교육 시스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다.

이뿐 아니라 성전환 수술 환자가 늘어나는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후회하며 “원래 성별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5) 성전환이 권리가 되는 순간 공적 영역에 미칠 영향

한국 사회에는 무책임한 실험주의자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여자, 남자가 아닌 여러 가지 성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늘어나도 공적 영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서구 사회만 보더라도 성별이 수십 가지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공적 영역에까지 뿌리내리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젠더 사상을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실제로 영국,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본인이 원하고 느끼는 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인정하는 공문서가 발행된다. 화장실과 라커룸은 소위 ‘남녀 아닌 기타 성별을 가진 자’(X-genders)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자들이 사용하도록 성 중립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원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미 자신의 성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으로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오리건 주의 한 지방법원은 성전환한 제이미 슈프의 청원을 받아들여 남녀가 아닌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 non-binary)로 성을 바꾸어 주었다.16) 원래 바이너리(binary)는 ‘두 개’라는 뜻이 있는데, 논바이너리는 말 그대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자를 지칭한다.

보통 성별 정정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하는 경우만 가능했다. 그러나 슈프는 2013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자신의 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에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성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혐오 범죄(hate crime)로 간주하는 법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일종인 혐오표현금지법이었다.

게다가 오리건 주에서는 수년 전부터 법원에 성별 교체를 요청할 수 있었고, 비교적 복잡한 과정 없이 성별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의사 진단서 없이도 성별 교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미국 언론은 슈프 사건을 두고 제3의 성을 인정한 미국 내 첫 판결이라고 대서특필했고, 이후 유사한 판례가 우후죽순 나왔다.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일이 빈번해질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난다. 성정체성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 성 중립 화장실은 시설 부족으로 설치한 남녀 공용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 행사 때도 성 중립 화장실을 선보인 바 있다.¹⁷⁾ 신기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자신의 성별이 여자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한 미국 와이오밍 주의 미켈이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소위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와이오밍 주의 차별금지법을 앞세워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자신을 여성이라 느끼며, 남자가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했다. 남성의 성기가 자신에게 있고 없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조지아 주에서도 트랜스젠더라며 여자 화장실에 드나들던 남성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²⁰⁾ 그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자신을 여자라고 주장하는 케이티라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10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소위 성소수자에게 더욱 관대할 것을 강요한 영국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다. 그는 이와 비슷한 범죄를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매번 보호받았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자 캐나다에서는 성 중립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느낀 여학생이 화장실 가기를 꺼리다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다.

스웨덴의 한 고등학생은 성 중립 화장실을 다시 남녀 화장실로 분리해 달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남녀 두 가지 성별만 인정하는 젠더 감수성이 없는 사람, 혹은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찍힙니다.”

서구 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제3의 성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터져도 성 중립 화장실을 받아들이고 찬양해야 관대한 사람인 것처럼 칭찬을 듣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구 사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가 가진 기본적 명제를 강제로 부인하게 하고, 공적 영역에서 이를 강제하는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막아 내야 한다.

전 세계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자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조건 역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여름, 법적 성별 정정 조건을 완화한 캐나다에서 이를 악용한 보험 사기 범죄가 일어났다.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것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한 것이다.²²⁾ 이 사건은 캐나다 앨버타 주에 살던 당시 24세 남성 데이비드(가명)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보험 감면 전략을 자랑하듯 자세히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캐나다와 미국 등에서는 남성이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통계에 따라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2018년 초에 새 차를 산 데이비드는 이 보험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 데이비드는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했다. 물론 그는 보험료 부담을 더는 것이 목적이지만, 성전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은 전혀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 뒤, 자신이 정신적으로 여성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갖춰 정부에 제출했고,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심리적 변화에 기반을 둔 성별 정정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간단한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을 거쳐 원하던 대로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된 데이비드는 성별 정정 후 이렇게 말했다. “마치 내가 체제를 부서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

고, 승리한 기분이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100% 남자지만, 법적으로는 여자다. 나는 단지 자동차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내려고 성별을 정정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한국의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²⁴⁾ 성전환에 관심이 많은 디지털 세대가 성전환 방법에 관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현실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성별을 바꾸려면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앞으로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전문의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등 5가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지침에서는 ‘2명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전문의의 감정서나 성장환경진술서는 1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제출 가능’으로 변경되었다. 참고용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그밖에 ‘성전환 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와 성장환경진술서에 ‘신청인의 성장 시기별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세부 내용도 삭제되었다. 일시적인 마음의 동요가 아니라 오랜 기간 성별 정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쉽게 열리게 되었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사법부가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성별 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학적 성별을 정정하는 것이 법적·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격려하는 풍조가 생기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성별에 이어 나이(age)나 인종(race), 종(species)까지 바뀌 달라는 황당한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성별을 원하고 느끼는 대로 바꿀 수 있다면 나이는 왜 못 바꾸겠는가?(trans-age) 성별과 나이를 바꿀 수 있다면 인종은 왜 못 바꾸겠는가?(trans-racial) 인종을 바꿀 수 있다면 종은 왜 못 바꾸겠는가?(trans-species)

실제로 서구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일반화된 사회일수록 나이를 연령 정체성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거나, 인종을 인종 정체성대로 바꾸겠다는 대책 없는 트랜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별 전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간성을 남녀 이외의 제3의 성별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의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부정되었다. 낮은 확률이지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간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간성은 제3의 성이 아니다. 아주 낮은 확률로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모호한 생식기를 가진 간성(intersex)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간성이 생기는 이유로는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것과 그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염색체는 정상 여성은 XX, 정상 남성은 XY인데, 성염색체 이상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발달 장애로는 X 하나만 있는 터너증후군과 XXY, XXYY, XXXY 등을 가지는 클라인펠터증후군이 있다. 터너증후군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난소의 결합 때문에 이차성징이 결여되고 가슴이 잘 발육되지 못하거나 임신할 정도로 여성성이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작은 몸집을 갖고, 성인이 되어도 키가 작다.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면 유방이 발달하고, 생리를 시작하게 된다. 클라인펠터증후군은 감수 분열 과정에서 무작위로 생기는 성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에 의해 생기는데, 사춘기에 남성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성형 유방이 발달하며, 고환과 음경의 크기가 유달리 작고 생식능력이 결여된다. 또한 지능이 낮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터너증후군과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경우는 사춘기에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에는 호르몬 투여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간성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이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볼 수는 없으며, 수천 명에 한 명꼴로, 즉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선천적인 염색체 기형이다.

3. 양성평등을 해체하는 성평등 조항은 독소조항이다.

양성평등은 말 그대로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말한다. 그러나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성평등은 각종 성적 지향(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 및

각종 성별 정체성(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을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래, 양성평등은 한국 법체계에서 중요한 법률용어로 정착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성평등은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경기도성평등백서 등을 통해 확인 할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모두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성적 행위와 평등 선상에 두고자 하는 시도인 성평등 조항은 독소조항이다.

4. 미성년자 시기의 성관계는 미래에 해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 등의 개입과 성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1) 미성년자 시기의 자유로운 성행위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해롭다

2003년도 헤리티지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때부터 성관계를 한 사람은 생애주기별로 성병에 걸리거나 저학력이 되거나 빈곤해지거나 미혼모가 되거나 결혼이 파탄에 이를 확률이 훨씬 높았다.⁸⁸⁾ 미성년자 시기에 성관계는 혼외 성관계이며 성적인 일탈로 보아야 하므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데 오히려 청소년 성관계에 대한 훈육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결국 청소년 피임교육위주로 치달고 있는 소위 포괄적 성교육으로 공교육의 성교육 방향이 치우칠수 있다.

또한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이자 대표를 지낸 에드윈 풀너는 성적 충동에 그대로 끌려다니는 성애화 교육이 아닌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절제하도록 훈육하는 이른바 ‘절제 교육’의 성과에 대해 기고했다. 그는 5000명의 10대를 조사한 결과 혼외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청소년이 그 서약식 후 성적 행위가 3분의 1로 감소했으며 부모가 이를 지지할 때 성관계 가능성이 75% 하락했다고 보고했다.⁸⁹⁾

88) <https://www.theheritagefoundation.org>

89) Christine C. Kim and Robert Rector,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Abstinence Education: An Update,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No. 2372, February 19, 2010.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09485.pdf>

“한국 전체 청소년의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평균 13.6세이므로 성윤리 교육 및 혼외 성관계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은 아무 효과가 없다. 차라리 어릴 때부터 안전한 성관계 방법, 즉 피임법을 교육해야 한다.”

성교육과 관련해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절제교육 무용론을 주장하며 피임교육의 중요성만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청 ‘제14차(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 약 94.3%는 성관계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7%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첫 성경험 연령이 평균 13.6세였다.⁹⁰⁾ 마치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이 평균 13세에 성관계를 하므로 피임 위주의 성교육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통계를 부풀려 성적 일탈을 일반화 하려는 시도는 허다하다. 미국 역시 청소년 대부분이 성관계를 즐기고 있다는 언론 조작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성장국가조사(the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에 따르면 한국에 비해 성적으로 매우 자유방임적이라는 미국에서조차 2006~2008년 청소년 중 약 60%는 성관계하지 않고 절제하며 생활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⁹¹⁾

지킬 것은 지키자는 성교육, 즉 성도덕과 결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육이 과연 효과 없는 것으로 치부돼야 하는가. 그들에게 콘돔과 피임약을 성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유일한 답일까.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절제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효과에 대한 증거’ 보고서에 따르면 전인적인 절제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고취하는 성교육은 신체적·정신적 웰빙 및 청소년이 미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적인 충동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도록 절제력을 함양, 지켜낼 것은 지키자”는 취지의 건강한 성교육이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10대 부터 활발한 성행위를 하면 이는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를 남기거나 정신적·정서적 웰빙을 감소시키며 낮은 학업성취도, 혼외 출산 등을 초래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90) 질병관리청, <제 14차(2018)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집>, p.293~294.
<https://www.kdca.go.kr/yhs/>

91) Chuck Donovan, Encouraging the Abstinent Majority , The Heritage Foundation, Jul 4, 2010.
<https://www.heritage.org/marriage-and-family/commentary/encouraging-the-abstinent-majority>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프리섹스를 조장하는 외설적 성교육에 대항하는 총 22가지의 절제력 함양 성교육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다룬다. 이들 22개 프로그램 중 17개에서 10대가 충동적으로 성교를 시작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조기 성행위가 감소하는 긍정적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앱스티넨스 온리 인터벤션’(2010년) 교육을 받은 학생의 3분의 1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성관계 시작 연령이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5개 공립학교에선 ‘리즌 오브 하트’(2008년)라는 절제력 함양 성교육 후 1년 뒤 해당 교육을 받은 학생의 9.2%가 성관계를 시작했지만, 교육받지 않은 학생은 16.4%가 혼외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헤리티지 키퍼스’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중고생은 1년 뒤 시행한 조사 결과 해당 교육을 받은 학생은 14.5%가 성관계를 시작했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26.5%가 성관계를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미국 중서부의 5개 도시 중학교에서 진행된 ‘지킬 것은 지키자’(2005년) 교육은 인성 함양과 절제의 이점을 알리는 성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이 교육을 받은 학생 역시 혼외 성관계 감소, 성관계 파트너 감소 경향을 보였다.

뉴욕 먼로 카운티에서 진행된 10대 성교육 프로그램 ‘나는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닙니다’(Not Me, Not Now)는 라디오·TV 광고, 부모·학생 교육 등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그 기간 15세의 성행위 비율이 46.6%에서 31.6%로 떨어졌고 15~17세 소녀의 임신율은 1000명당 63.4명에서 49.5명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아칸소주 리틀록에서도 절제력 향상 성교육인 ‘자발적인 절제’(Abstinence by Choice) 프로그램을 매년 20개 학교 4000여명의 7~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교육받지 않은 학생에 비해 절제교육을 받은 학생의 성행위 시작사례가 대폭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⁹²⁾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부모의 80%가 학교에서 자녀에게 성관계할 권리 및 피임을 강조하는 ‘세이프 섹스’(safe sex) 교육보다는 절제력을 함양하는 성교육을 시행

92) "Safe Sex": Time To Abstain, Jul 22nd, 2002,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education/commentary/safe-sex-time-abstain>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절제력 함양의 이점을 배울 필요가 있는 10대들이 절제의 이점을 전혀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성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10대의 성행위는 본인과 사회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2) 청소년의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윤리나 도덕, 생명과 가정 중심의 성품교육보다는 피임 위주의 교육으로 치닫게 된다.

성교육 현장에서 시행되는 청소년 피임 교육 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① ‘청소년도 성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

첫 번째는 청소년에게 피임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제’ 자체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피임 중심 교육은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 즉 미성년자의 혼외 성관계를 당연한 학생의 권리로 전제하고 있다.

“네 남자친구(혹은 여자친구)와 성관계할 땐 콘돔 정도는 쓸 줄 알아야 해. 애라도 생기면 어떡하니. 낙태하면 부작용 심해. 너의 몸은 소중한니까 콘돔을 챙겨.” 이것이 청소년 성교육 현장의 일상적 메시지다.

이는 청소년 간 혼외 성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부추기는 교육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성교육 사조를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한 결과이며 일종의 문화사대주의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 청소년 피임 교육에 항의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늘어나는 것이다.

피임 교육의 잘못된 전제를 바르게 수정해야 한다. 모든 피임 교육은 1남1녀로 구성되는 결혼이 전제돼야 한다. 무엇보다 성관계는 결혼 후 부부관계에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한다. 전제를 잘못 세우면 아무리 훌륭한 정보 전달도 결국 외설적 교육이 되고 만다.

합의 하에 청소년끼리 하는 성관계를 정상이라고 전제하고 시행하는 피임 성교육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피임 기술이 나온다 해도 전제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분명 다음 세대를 도덕적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쉬쉬하는 은폐식 성교육 역시 답은 아니다. 잘못된 전제를 바로 교정하고 무책임하고 실험주의적인 방식으로 성교육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없다. 성교육에선 극단적 금욕주의도, 맹목적 자유주의도 모두 위험하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둔 성교육, 즉 바른 전제 위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전제를 바로 세우면 청소년의 성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부부, 즉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어긴 청소년이 정죄감에 머물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간음을 했을 때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선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교육해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②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 형성

현행 미성년자 대상 피임 교육의 두 번째 문제점은 ‘잘못된 전제’의 결과물로서, 그 전제와 연속 선상에 있다. 부부간 정상적 성관계의 열매로서 임신이 아닌 ‘미성년자 간의 혼외 성관계로 발생한 임신’을 우려한 나머지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지금처럼 청소년 간 혼외 성관계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피임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뇌리에는 소중한 아기에 대한 첫인상이 왜곡된다. 생명이 주는 기쁨과 소중함을 묵상하기 전에 생명을 피해야 할 대상 혹은 위기와 저주의 첫인상으로 각인시키는 잘못된 효과를 낳게 된다는 말이다.

2015년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발견한 교계와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잘못된 성교육의 부정적 효과가 그대로 드러났다. 앳된 목소리의 여자 청소년이 갑자기 “청소년도 성적 권리가 있고 섹스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당당하게 “임신과 출산은 섹스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라고 발언했다.⁹³⁾

이 여학생은 임신이 위험한 것이라고 왜 이렇게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청소년의 성관계 즉 혼외 성관계를 통한 임신을 경고하느라 피임교육을 행하다 보니 당연히 임신 자체가 ‘위기’라는 이미지로 각인 된 것이다.

청소년을 만나 상담하다 보면 임신과 생명에 대한 인상이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변화돼 있음을 인식한다. 임신 자체가 위기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차세대의 심령 속으로 파고들어 가고 있음을 체감한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가치관 교육을 한 뒤 한 여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청소년 간의 성행위로 생긴 아기가 아닌 부부간의 성관계로 생겨난 아기라면 그

93) <https://www.youtube.com/watch?v=UsLgc-8ioZM>

임신은 위기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웬지 임신이나 출산 자체가 커다란 트라우마처럼 무의식적으로 각인돼 있어요. 원치 않는 청소년 임신에 대한 대책으로 피임 교육을 받아 왔거든요. 임신이라는 단어에 결혼이 아닌 청소년 성관계, 사귀는 오빠와의 성행위라는 단어가 늘 세트로 달려 나오는 것같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 생명 잉태는 축복이라기보단 피임을 제대로 못한 처참한 결과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는 부정적인 생명관이 싹터 아기에 대한 첫인상 자체가 왜곡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가는 피임 교육을 한답시고 부부간 성관계가 아닌 청소년 간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니 그 결과물인 임신과 새로 태어날 인간에 대한 인상도 달라져 버린 것이다.

청소년의 프리섹스를 권리로 전제한 피임교육을 통해 그 프리섹스의 결과 파생된 생명을 ‘소중한 자녀’가 아닌 ‘지워버려야 할 골칫덩이’로 대상화하기에 이를 수 있다. 즉 간접적 낙태 옹호 효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양육자들은 태중의 자녀에 대한 첫인상이 위기이자 혐오의 대상이라는, 끔찍한 인간관을 구축하는 성교육을 반대해야 한다. 자기 성적 결정권의 무한 주입의 결과가 결국 생명 경시 및 무의식적 살인 의지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생명 잉태를 인생의 위기로 각인하는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1남1녀가 영육 간의 연합을 맹세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다. 이 결혼 안에서 성, 즉 부부간 성관계에 따른 임신과 출산이 먼저 순리적으로 교육된다면 생명 탄생에 대한 첫인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왜곡, 주입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크리스천 부모는 세상 성교육이 청소년 성관계에 따른 위기로서 출산을 각인하기 전에 기쁨으로 자녀를 낳고 이 땅에 충만해져 가는 통로가 되는 가정의 가치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고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부모가 직접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게 체험하게 된 소소한 기쁨을 아이들과 진솔하게 나누는 것도 바람직하다. 결혼 안에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 따뜻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서 생명은 저주와 위기가 아니라 무한한 기쁨이자 설렘, 희망이라는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 이는 간접적으로는 자살 예방 교육 효과도 가진다.

③ 피임의 불완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 부족

현 피임 교육의 세 번째 문제점은 피임의 불완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임 방법의 불완전성이란 쉽게 말해 피임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물론 많은 성교육 교육자들이 피임방법이 불완전함을 ‘피임에 실패할 수 있으며 100%의 피임 성공 기술은 없다’고 간단하게 언급 정도는 한다. 그러나 피임을 실패한 상황을 깊이 있게 직면하는 훈육을 충분히 하지는 않는다.

한 제약회사가 2020년 9월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콘돔의 피임 성공률은 82%에 그친다. 즉 콘돔을 사용해도 5명 중 1명은 임신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다. 월경주기를 염두에 두고 배란기를 피해 성관계를 하는 년방식을 일컫는 자연주기법 역시 피임 성공률은 76%였다. 4명 중 한 명은 피임에 실패해 임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체외사정을 통한 피임방법 역시 피임 성공률이 70%대에 머물렀다. 경구 피임약의 피임 성공률은 91%로 발표됐다.⁹⁴⁾

결국, 피임의 기술들에 대한 통계는 피임을 했어도 얼마든지 임신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뒀야 함을 보여준다.

청소년이 성적 충동에 몰입된 상태에서 ‘설마 아기가 생기겠어’라는 마음으로 콘돔을 맹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임 기술을 과신하게 하거나 그 한계를 불명확하게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피임 기술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주지시켜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즉, 성관계의 결과 잉태될 생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이다. 성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성적 권리만 내세우기 전 성관계의 결과로 생명이 생겨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밝혔듯 어떤 피임 기술도 100%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즉, 피임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태중에 생명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성관계한 두 남녀가 아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됨을 의미한다. 얼마든지 부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이에 대한 생각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피임약을 입에 털어 넣는 것, 혹은 콘돔을 사용해 성관계하는 것까지만 생각이 머물게 하는 성교육은 무책임하다.

피임 기술의 불완전성을 주지시키고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도록 충분히 책임 및 인성교육에 공을 들인다면 성관계를 하나의 권리roman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94)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1529>

“피임만 잘하면 돼. 하지만 그러다가 실패해서 생긴 아기는… 그런 건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지 마”라고 은연중에 유도하는 실험적이고 무책임한 성교육을 경계해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결과 생기는 생명에 대해서는 ‘난 몰라. 생각해 본 적 없어’라고 결론 내리게 만드는 교육은 기독교 성교육에서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성관계의 권리만 외칠 게 아니라 반드시 책임과 의무, 헌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차세대가 깨달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한 여자 청소년의 탄식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아무리 피임을 잘한다 해도 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피임방법 위주로 교육하고 그 방법이 가진 불확실성에 대해선 딱 부러지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런 교육이야말로 무책임한 성교육 아닌가요. 성관계를 즐긴 후 벌어질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권리만 가르치는 교육은 정말 잘못된 성교육입니다. ‘남친이 생기면 콘돔 잘 챙겨서 성관계하라’가 아니라 ‘성관계는 결혼한 뒤 하는 거야’라고 제게 말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④ 피임의 부작용에 대한 정보 부족

현재 피임 교육의 네 번째 문제점은 각종 피임 방법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구에서는 10대 청소년의 가방에서 피임약이 나와도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으로 점차 인식돼 가고 있다. 10대가 피임약을 책가방 한쪽에 잘 비치하고 챙겨 먹는 것을 장려하는 피임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등에서는 능률적인 피임을 원해서 피하에 호르몬을 이식한 청소년에 대한 통계도 등장한다.

그러나 의약학계 전문가는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해선 쉬쉬하거나 정확히 숙지시키지 않는 분위기를 우려한다. 각종 호르몬 피임약이 우울증 혈전증 등의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⁹⁵⁾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샬롯 스코블랜드 교수팀은 2000~2013년 15~34세 여성 106만여명을 대상으로 호르몬제 피임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이보다 우울증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각주?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19>) 특히 이식형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한 10대는 우울증 위험이 1.8배, 프로게스테론

95)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9082901654

전용 알약 복용 여성은 2.2배 높았다. 해당 연구팀의 오드빈드 리데가드 교수는 “호르몬 피임약을 복용하는 10대에서 우울증 위험이 평균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10대는 피임제를 먹기 전 그 부작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조언했다.

한때 피임약과 우울증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피임약의 단기적 부작용에만 집중할 채 장기적 부작용은 간과해 온 실수를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즉, 10대 때 먹은 피임약이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연구자료 발표논문인 ‘컨버세이션’은 10대에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은 성인이 돼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 혹은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다고 보도했다.

얼마 전에는 경구피임제가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뇌부위를 축소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대 니콜 피터슨 교수팀은 “피임약의 주성분인 합성 호르몬이 감정을 조절하는 뇌부위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피임약을 복용하는 일부 여성에서 불안·우울 증상이 동반되는 것은 두뇌 부위의 크기가 축소되면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⁹⁶⁾

피터슨 교수팀은 그 근거로 90명의 여성을 경구피임약 복용군 44명과 비복용군 46명으로 분류하고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은 안와전두피질과 후방대상피질의 크기가 수축해 두께가 얇아졌다고 발표했다. 후방 대상 피질은 내향적 사고를 관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피임약의 혈전 생성 부작용 역시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임제 복용 지도 매뉴얼을 통해 만 35세 이상이고 흡연자이면 피임약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 지침을 내렸다. 이유는 경구피임약이 혈전 생성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편두통, 고혈압 여성 등도 모두 피임약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피임약 복용으로 한 해 2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타 혈전 생성 사고도 한 해 250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⁹⁷⁾

피임 효과는 증가시키고 부작용은 감소시켰다며 자신 있게 내놓은 3·4세대 피임약에서 압도적으로 더 높은(1751건) 혈전 사고가 발생해⁹⁸⁾ 의학계에 충격을 줬다. 물론 모든 의약품은 그 정작용이 부작용을 웃돌아 환자에게 끼치는 유익이 해악보다 더 큼이 확실함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상용화될 수 있다.

9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059383>

97) <https://www.yna.co.kr/view/AKR20130327210600081>

98) 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p=3873

정작용은 차치한채 부작용만 침소봉대하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다. 즉 약의 부작용만 들여다 보다보면 먹을 약이 없다. 그러나 어떤 의약품이든 그 부작용에 대해 쉬쉬하거나 그 부작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용을 권고하는 것은 의료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그 대상이 10대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⑤ 국내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모방적 교육 방식과 내용

현행 피임 방법 교육의 다섯 가지 문제점 중 마지막은 서구에서 실시하는 피임 교육을 국내 성교육 현장에서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2005년 1월 약국에서 미성년 청소년이 응급피임약 노레보(LorLevo)를 요구할 경우 제한 없이 무료로 줄 수 있는 조항을 법제화했다. ‘내일의 피임약’으로도 불리는 노레보는 성관계 후 24시간 안에 복용하면 피임에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99)

국내에도 현대약품이 수입해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대부분의 경구피임약은 처방이 필요 없지만, 응급피임약의 경우 고농도 호르몬 제제여서 그 부작용이 사전 경구피임약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 구매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그런데 프랑스 청소년은 이 응급피임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에선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프랑스 학교 보건실에선 2004년 3월부터 응급피임약을 요구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한다.100)

프랑스의 28학군을 조사한 결과, 중고등학교 청소년 6227명이 이 약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중 63%가 약 공급에 만족한 것으로 밝혀졌다.101) 많은 프랑스 성교육 관계자들이 응급피임약 공급이 청소년들의 임신을 막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언론은 소녀들이 노레보를 복용하는 것을 잇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임신에 대한 응급조치로 낙태 시술이 더 자주 시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에선 어떤 토론이나 공론화도 없이 그저 선진국이 시행한 정책이니 무작정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그렇게 사대주의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꼼꼼히 따져보고 국내 사정에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청소년에게 노레보를 무료로 나눠줬다는 말은 그만큼 청소년 간 성관

9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0>

100) https://imnews.imbc.com/replay/2001/nwdesk/article/1884459_30743.html

10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0>

계가 흔해졌다는 뜻이다. 응급피임약을 무료로 나눠줘야 할 정도로 청소년 성윤리와 성도덕이 무너진 프랑스를 성교육의 모범 사례로 제시하는 성교육자들도 있다. 프랑스에선 해마다 1만명의 청소년이 임신하는데, 그들은 이 수치가 1995년에서 97년 사이 조금은 주춤하다가 낮아지고 있다며 프랑스의 피임 위주의 성교육을 지지한다.¹⁰²⁾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피임 교육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놓기 바쁘다.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의 임신 및 출산이 줄어든 이유가 청소년이 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이전보다 더 건전한 이성 교제를 가져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들에게 강력한 피임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약국과 학교 보건실에서 무료로 응급피임약을 살포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교육 현장에 몸담은 전문가 중 상당수는 10대를 아예 절제 및 자기조절 능력을 상실한 존재로 치부한다. 이런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기에 콘돔과 사전 피임약, 응급피임약을 종류별로 골고루 교육하는 일에 주력한다. 즉 10대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피임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성교육이라고 목적을 높이는 게 최선인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여진다. 이런 현실인 만큼 건전한 성교육을 진행하는 현장 전문가의 반론을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나가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평등 교육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과 결혼, 가정과 사랑의 근간을 흔들고 반생명적이고 반가정적인 교육으로 치달고 있다. 즉 이 글에서 지적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4가지 독소조항은 한마디로 미성년자의 성적인 일탈의 동호,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훼손하고 교육 공동체의 존엄함을 위협하는 것 나아가 사회와 나라의 근간을 흐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독소조항을 제거한다해도 이 조례가 있는한 언제든지 다시 추가가 가능한 독소조항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며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폐지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10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0>)

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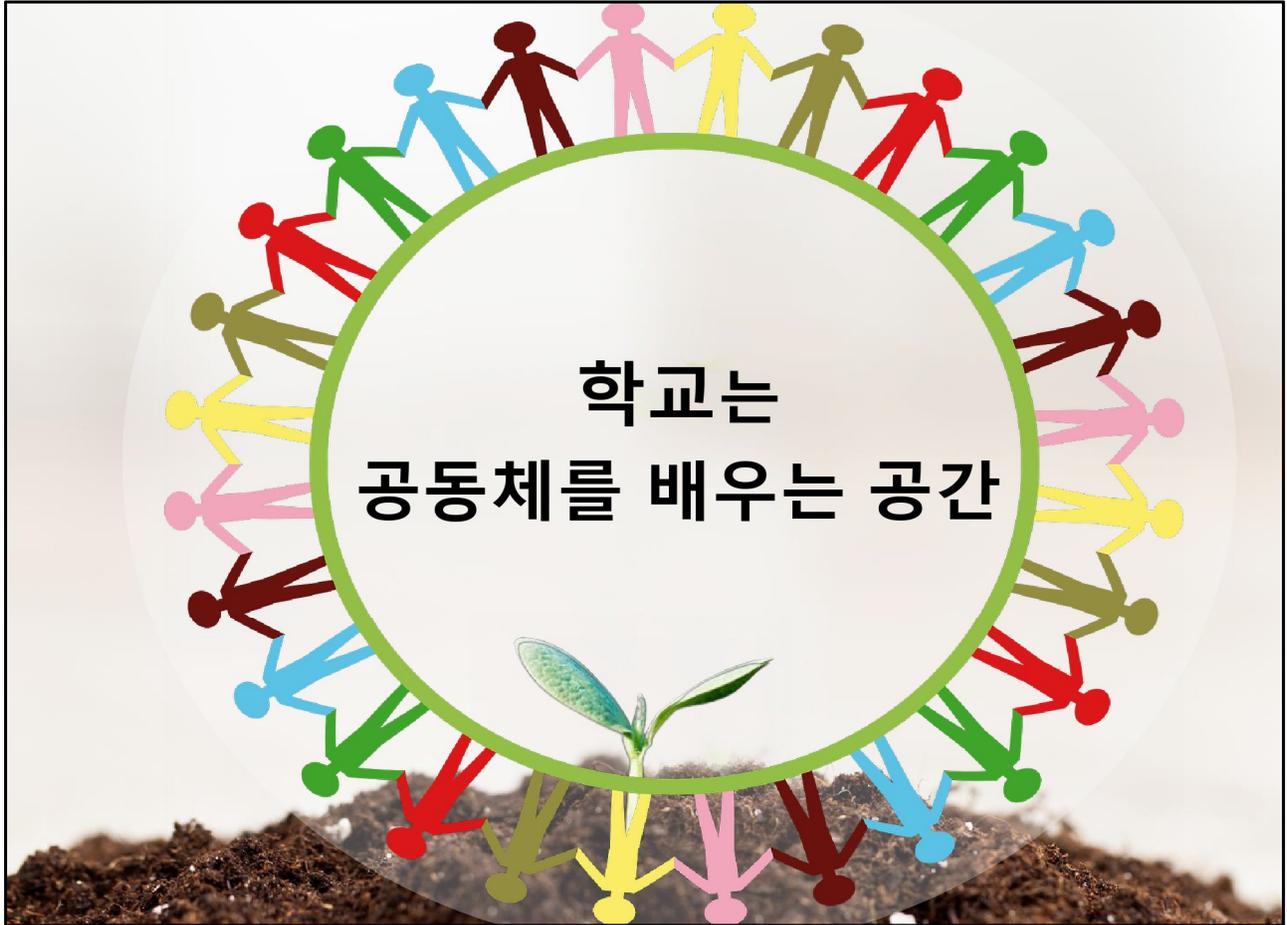
학생인권 조례를 통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박 신 자

(홍동중학교 교장)







학교는
공동체를 배우는 공간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교육기본법 제13조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 4 조 책무

2. 학교의 장, 교직원 등은 학생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고,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3. 보호자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하여야 한다.

4.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첫 번째 질문

학생은 누구인가?

인권친화적인 학교 1. 약속은 힘이 세다

2023

“ 흥동중학교
교육공동체 ”
생활협약식

4월 28일(금) 2시 30분 '해누리'에서 만나요!!



인권친화적인 학교

2. 참여로 우리가 된다

2023 흥동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공청회

일시 2023.06.21.(수) 11시
장소 흥동중학교 해마루

흥동중학교는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문화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성장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을 꿈꾸며 모두 모여 만들어 가는 학교생활규정 **함께 해요!!**

인권친화적인 학교로의 변화



인권친화적인 학교

3. 학생자치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한다

흥동중학교 인권의 날 행사

7월 12일 통갯길, 점심시간

통갯길 프로그램
인권 관련하여 우리학교에 바라는 점을 포스트잇에 작성하면 간식 증정

점심시간 프로그램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수면 간식 증정

장소 흥동중 중앙현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흥동중학교 학생인권위원회

2022학년도 학생회 제안 의견(안)

제안년월일 : 2022. 4. 1.
제안자 : 학교장
소안 학생회

1. 제안 이유
2022학년도 학생회장단의 공약 및 학생회를 거쳐 모아진 학생들이 제안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

2. 세부안건

가. 운동장 편의시설 확대
- 운동장 음수기 교체 및 비누 비치
- 체육수업 혹은 체육대회 시 운동장에서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

나. 화장실 환경 개량
- 여학생용 복판안 설치
- 화장실 각 칸마다 화장지 비치
- 디퓨저 비치

다. 소요예산

순번	안건명	소요예산	금액비고
1	운동장 음수기 설치 (비누포함)	3,600,000원*1대	3,600,000원
2	운동장 음수기 설치	5,000원*10개	50,000원
3	화장실 여성용물 보관함 설치	20,000원*10개	200,000원
4	화장실 각 칸마다 화장지 비치	11,000원*20개	220,000원
5	화장실 디퓨저 비치	30,000원*4개	120,000원
합 계			4,190,000원

3. 기대효과
가.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향상
나. 학생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향상
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



인권친화적인 학교

4. 학교에서 만큼은 차별 NO

뉴욕시 중재 및 훈육조치 표준
(K-12학년 훈육규정 및 학생 권리와 의무) /
충남학생인권조례 제 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연령, 실제 또는 인지되는 인종, 신념, 피부색, 성별, 성 표현, 종교, 출신 국가, 시민권/ 체류신분, 체중, 성적 성향, 신체 및 정서적 상태, 장애 사실, 혼인 여부 및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게 타인을 대하며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남을 비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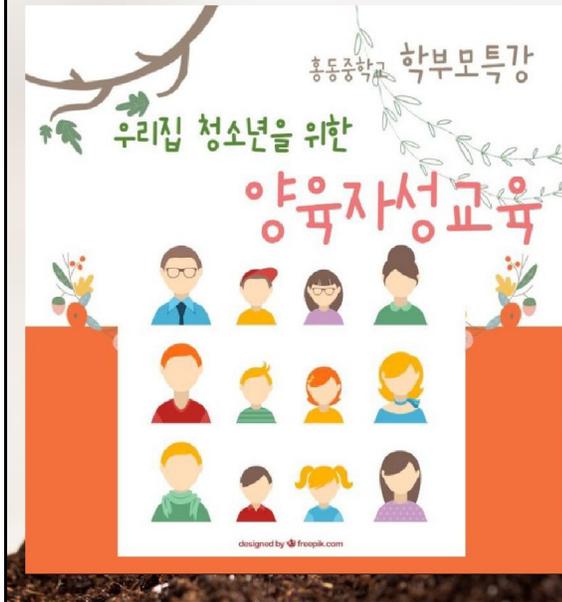
행동을 삼가할 의무

-K-12학년 훈육규정 및 학생 권리와 의무중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

5. 서로 기대어 산다



인권교육은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기술과 태도를 익히게 된다



